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렴 채움 국민연금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 2018-04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프로젝트 2018-04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혜영 · 김혜진 · 김아람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든든한 노후, 청렴한 국민연금이 함께 합니다

▌프로젝트 2018-04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혜영 · 김혜진 · 김아람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머 리 말

본 연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체납사업장 관리에 관한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체납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제도와 타 국가들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에 대한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의 당해 징수율은 98% 가량으로 약 2%가 그해에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후 수년간 징수되지 못한 미납분은 장기 체납액으로 누적되는데 현재 누적 체납액은 2조 1천억에 달한다. 즉 누적 체납액의 규모만큼 근로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인데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약 50만 6천개의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77%인 39만개소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체납으로 피해를 입는 다수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임을 알 수 있었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납사실 통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매우 미미하다.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최근 5년간 약 1,000명 내외이며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자는 연간 100명 내외의 수준이다. 제도의 이용자수가 이처럼 적은 까닭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이유가 가장 크며 보험료 납부

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다는 것을 근로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사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본인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행 체납사실 통지,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그리고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그 조치이기는 하나 근로자 부담에 대한 완화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가입기간 전체 인정,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 확인서 제출의 간소화,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간과 납부기간의 확대, 기여금 개별납부 가입 인정기간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별도의 기금을 활용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성혜영 부연구위원과 김혜진 부연구위원 그리고 김아람 주임연구원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졌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8. 1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이 용 하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Ⅰ. 문제제기 ····· 17

1. 연구배경과 목적 ····· 17
2. 연구방법 및 범위 ····· 19

Ⅱ. 체납사업장 관리제도 현황 ····· 21

1. 체납사실통지 ····· 21
   가. 의의 ····· 21
   나. 절차 ····· 24
   다. 통지의 내용 및 효과 ····· 24
2.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월)에 대한 가입기간 산입 ····· 24
   가. 내용 ····· 25
   나.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의 제출 ····· 25
3. 기여금 개별납부 ····· 25
   가. 의의 ····· 27
   나. 주요 연혁 ····· 29
   다. 주요 내용 ····· 31

Ⅲ.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실태 ····· 31

1. 사업장 체납현황 ····· 31
   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현황 ····· 31
   나. 사업장 종류별 현황 ····· 32
2. 체납사실통지 및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현황 ····· 41
   가. 체납사실통지 주요 현황 ····· 41
   나.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주요현황 ····· 42

3. 기여금개별납부현황 ····· 54
가. 일반현황 ····· 54
나. 세부현황 ····· 58
4.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 67
가. 조사 개요 ····· 67
나. 조사 결과 ····· 69
다. 시사점 ····· 81
5. 조선업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 83
가. 조사 개요 ····· 83
나. 조사 결과 - 사용자 ····· 84
다. 조사 결과 - 근로자 ····· 91

Ⅳ.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해외사례 검토 ····· 97
1. 일본 ····· 97
가. 제도개요 ····· 97
나. 체납 보험료 청구절차 ····· 98
다. 후생연금특례법 개요 및 구조 ····· 100
2. 미국 ····· 102
가. 제도개요 ····· 102
나. 체납발생 및 처리절차 ····· 103
다. 사회보장세 관리체계 ····· 106

Ⅴ.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 ····· 109
1. 근로자 지원의 타당성 검토 ····· 109
2. 현(現) 근로자 지원제도 개선필요성 ····· 113
3. 현(現) 근로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 115
4. 사용자 처벌 등 징수강화 필요 ····· 126

참 고 문 헌 ····· 129

표차례

〈표 Ⅱ-1〉 체납사실 통지 일정 ····· 22
〈표 Ⅱ-2〉 체납사실 통지 절차의 예시 ····· 23
〈표 Ⅱ-3〉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기간 관련 법 개정사항 ····· 28
〈표 Ⅱ-4〉 〈보험료 개별 납부제도와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 비교〉 ····· 29
〈표 Ⅲ-1〉 사업장 체납보험료 연도별 징수 현황 ····· 31
〈표 Ⅲ-2〉 사업장 체납보험료 연도별 현황 ····· 32
〈표 Ⅲ-3〉 사업장 규모별 체납 현황 ····· 34
〈표 Ⅲ-4〉 체납월수별 현황 ····· 35
〈표 Ⅲ-5〉 체납금액별 현황 ····· 36
〈표 Ⅲ-6〉 사업장 업종별 현황 ····· 38
〈표 Ⅲ-7〉 지역별 현황 (상단 2016년 1월, 하단 2018년 1월 기준) ····· 39
〈표 Ⅲ-8〉 체납사실통지 현황 ····· 42
〈표 Ⅲ-9〉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 ····· 43
〈표 Ⅲ-10〉 성별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현황 ····· 44
〈표 Ⅲ-11〉 연령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현황 ····· 46
〈표 Ⅲ-12〉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가입기간 분포〈2017〉 ····· 48
〈표 Ⅲ-13〉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성별 분포〈2018.05〉 ····· 48
〈표 Ⅲ-14〉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성별 분포〈2017〉 ····· 49
〈표 Ⅲ-15〉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성별 분포〈2018.05〉 ····· 49
〈표 Ⅲ-16〉 연령에 따른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가입기간〈2017〉 ···· 50
〈표 Ⅲ-17〉 연령에 따른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가입기간〈2018.05〉 ·· 51
〈표 Ⅲ-18〉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7〉 ····· 52
〈표 Ⅲ-19〉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8.05〉 ····· 52
〈표 Ⅲ-20〉 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7〉 ····· 53

〈표 Ⅲ-21〉 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8.05〉 … 54
〈표 Ⅲ-22〉 기여금개별납부 신청 현황 …… 55
〈표 Ⅲ-23〉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 성별 현황 …… 56
〈표 Ⅲ-24〉 연령별 기여금개별납부 신청 현황 …… 57
〈표 Ⅲ-25〉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 현황〈2017〉 …… 58
〈표 Ⅲ-26〉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 현황〈2018.05〉 …… 59
〈표 Ⅲ-27〉 가입기간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들의 성별현황 〈2017〉 …· 60
〈표 Ⅲ-28〉 가입기간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 성별현황〈2018.05〉 · 60
〈표 Ⅲ-29〉 연령에 따른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2017〉 …… 61
〈표 Ⅲ-30〉 연령에 따른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2018.05〉 …… 62
〈표 Ⅲ-3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2017〉 …… 63
〈표 Ⅲ-3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2018.05〉 …… 63
〈표 Ⅲ-33〉 개별납부신청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7〉 …… 65
〈표 Ⅲ-34〉 개별납부신청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8.05〉 …… 66
〈표 Ⅲ-35〉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개요 …… 68
〈표 Ⅲ-36〉 조사대상자 세부사항 …… 69
〈표 Ⅲ-37 조선업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개요 …… 84
〈표 Ⅴ-1〉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 112
〈표 Ⅴ-2〉 가입기간 인정사례 …… 117
〈표 Ⅴ-3〉 각 방안별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 124
〈표 Ⅴ-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주요내용 …… 125
〈표 Ⅴ-5〉 고용보험기금의 주요내용 …… 126

그림차례

[그림 1] 성별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 ····· 44
[그림 2] 성별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가입현황 ····· 45
[그림 3] 연령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 ····· 46
[그림 4] 연령별 사업장가입자 가입현황 ····· 47
[그림 5]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 성별분포 ····· 56
[그림 6] 연령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 분포 ····· 57
[그림 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7〉 ····· 64
[그림 8]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8.05〉 ····· 64
[그림 9] 일본의 체납보험료 청구절차 ····· 99
[그림 10] 후생연금특례법의 특례보험료 청구절차 ····· 102
[그림 11] 사회보장세 미납에 따른 청구절차 ····· 104

요 약

Ⅰ. 문제제기

1. 연구배경과 목적

□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일괄 납부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음

○ 201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약2조원

□ 사업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사실 통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보험료 체납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본 연구는 체납사업장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제안된 개선방안의 장단점을 근로자 측면과 제도 운영 측면에서 평가·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범위

○ 제도현황 파악을 위해 국민연금법의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의 직무교재 등을 분석하고 관련 실무자들과 회의를 거쳤으며 해외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실시

○ 체납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 의견 청취

○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사실 통지기간의 가입기간 인정과 기여금 개별납부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함

Ⅱ. 체납사업장 관리제도 현황

1. 체납사실통지

○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 체납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월에 대하여 기여금이 원천 공제된 경우에는 체납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줌
  *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봄

○ 사업자가 기여금개별납부를 한 기간에 대해 추후 사용자의 납부 또는 공단의 징수 등에 의해 체납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중복되어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
- 이 경우, 그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개별 납부한 금액을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다시 반환함

2. 기여금 개별납부

○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한해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중 자신의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체납사실통지 이후 체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해 납부 가능
- 신청기한은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며, 별도의 연체금은 징수되지 않음

Ⅲ.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실태

1. 사업장 체납현황

○ 보험료 부과금액에 대한 당년도 징수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8%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며, 매년 2%가량이 당년도에 징수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실정

○ 2017년 현재 누적 체납액은 2조 1천억원 규모

○ 사업장 종류별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사업장 개소수도 가장 많고 전체 금액면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가동 중인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가동 중 사업장이 다소 많았으며 금액은 휴·폐업 사업장의 체납규모가 더 컸음

○ 체납급액별 현황을 보면 사업장 수는 5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사업장 수와 체납개월 수, 체납금액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 체납사실통지 및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현황

○ 최근 5년간 체납사실통지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장 규모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는 매해 약 1백만 명 이상이 체납사실통지를 받았고 이 규모는 매년 비슷한 수준

○ 체납사실통지 사업장 규모는 2013년 약 29만 개소에서 2018년 5월 현재 33만 개소로 점차 증가

- 이는 국민연금의 근로자 적용기준 완화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 체납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

○ 2013년부터 2018년 5월 현재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한 근로자의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이후 다소 감소

- 체납사실통지인원 대비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그 비중이 평균적으로 0.1% 로 낮음

3. 기여금개별납부현황

○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자 규모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3년에는 월평균 기여금개별납부신청인원이 6명이었으나 2018년 5월 기준 약 20명
- 2013년 기준 기여금 개별납부월수는 월평균 약 58개월이나 2018년 5월 기준 약 118개월

4.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 체납사업장의 구체적 실태 확인을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함

○ 응답자 유형은 1) 체납사실 통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한 자, 2) 원천공제 확인서를 미제출한 자, 3)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 자, 4)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 그리고 5) 체납사업장의 회계담당자로 구분

○ 각 유형 당 2명씩 총 10명을 인터뷰

□ 조사결과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함께 4대 보험 가입을 확인

○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어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을 통해 알게 됨

- 체납 사업장의 대부분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미납과 납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체납 금액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듦

○ 체납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회사를 회사명과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면서 체납보험금을 해결하지 않아 그에 대한 피해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함

○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이미 공제한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사례도 있음

○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제도를 잘 알지 못한 경우와 사업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

○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제도를 이용한 사례임

□ 시사점

○ 우편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 등 체납사실 통지의 방법을 다변화할 필요

○ 원천공제확인서와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병행, 근로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보험료 징수도 요구됨

5. 조선업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 2016년 시행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에 따라 조선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 해당 업종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실태와 보험료 체납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터뷰 조사를 실시

○ 대상 사업장은 총 9개였으며 이 중 4곳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동 중인 사업장이었고 5곳은 폐업한 곳

- 유지사업장 4곳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모두 면담에 응하였고 탈퇴사업장 중 3곳은 대표자 즉 사업주만 2곳은 근로자만 면담에 응함

□ 사용자 인터뷰 결과

○ 대부분의 사용자는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응답

- 경기악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급여, 운영비, 세금 및 4대보험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
- 경제적으로 사업장 운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주로 원청 사업체 또는 1차 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적게 받은 것을 그 원인으로 언급

○ 대부분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 하였으며 급여명세서 등에도 이를 기록·관리한다고 응답

○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이 되면 근로자에게 통지가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보험료 체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함

○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으며, 탈퇴사업장 사용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미납보험료에 대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분할 납부하겠다고 답함

○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고 연체금 면제를 요청하는 사용자도 있었음

□ 근로자 인터뷰 결과

○ 근로 형태 즉 정규직과 일용직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며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확인하고 있었음

○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을 체납통지서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 미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체납 사업장에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납부를 독촉하거나 항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근로자 개별납부 제도에 대해서는 면담자 모두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용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함

○ 체납사실 통지 첫 달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응답한 케이스는 1건, 탈퇴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경우 알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응답

○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은 회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나타냄

- 가동중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압류처분을 걸면 대출이 막혀 회사 존속이 힘들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체납처분은 반대
- 탈퇴 사업장의 경우 조선업에 대해 보험료 유예를 해준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Ⅳ.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해외사례 검토

1. 일본

가. 제도개요

□ 일본의 연금제도는 가입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1층은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영자 등 피용자가 아닌 이들이 주요 가입 대상임(제1호 피보험자).

○ 2층은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피용자가 가입대상에 해당됨(제2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제3호 피보험자로 구분되고, 제3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들의 연금급여는 후생연금 가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됨

○ 3층은 후생연금을 보충하는 연금제도로 기업연금 등이 있음

나. 체납 보험료 청구절차

□ 청구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인 후생연금보험법 86조 및 건강보험법 181조에 의거하여 청구함

○ 기본적으로 체납 발생 시,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독촉장이 송부되며, 지정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체금 또는 독촉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음.

○ 독촉을 받은 자가 지정 기한까지 보험료나 징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후 진행되는 부분은 체납처분으로 간주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거나,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시정촌(市町村)에 대하여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 독촉장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이 계속되면 통상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피보험자증이 교부되어 1년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음.

다. 후생연금특례법 개요 및 구조

□ 일본은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알 수 없고 연금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후생연금 특례법이 적용됨.

○ 2007년도에 후생연금특례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가입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

○ 이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기구에서는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1단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명을 공표하고(2단계), 4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납부 권장(3단계)함. 그럼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4단계)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특례보험료 지급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미국

가. 제도개요

□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인 OASDI는 21세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 연금을 수급하는 구조임

○ OASDI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로 과세 적용되어 연금 종류에 따라 노령·유족 또는 장애연금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수급권자

가 수급조건에 적용되는 시기에 해당연금을 지급함

나. 체납발생 및 청구절차

□ OASDI는 사회보장세로 운영되므로 사회보장법에 의거하여 관리 및 운영됨. 즉,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체납하게 되면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법위반에 적용됨.

○ 사회보장법은 넓은 범위의 처벌(penalty)과 세부 항목인 부정행위(penalty for fraud)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소득 행위에 따른 지급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작성 또는 은폐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지급액을 변경 및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등은 사회보장감독관을 기만하는 행위 및 허위 정보 제공으로 간주하여 이는 중범죄로 판결될 수 있으며, 미국 법전 18장(United States Code, Title 18)에 따라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모두 받게 됨.

□ 따라서 체납 발생 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소되어 기소된 사법 구역 내의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존재함

다. 사회보장세 관리체계

□ 국세청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이 체납 및 탈세를 감시하고 조사함

○ 범죄수사국은 부도덕한 세금행위(체납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세금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보고를 수령하면 추가적 검토를 진행함

○ 따라서, 미국은 사회보장세 체납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탈세나 징수회피로 간주하여 법적 처분을 받게 되어있음. 또한 처분 대상자가 책임자로 정의되는 모든 이들을 고려하고 이들의 개인 자금도 압류할 권한이 있으며, 형사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미납분 및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추적함. 즉, 실질적으로 납입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법적제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음

Ⅴ.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

1. 근로자 지원의 타당성 검토

□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 보험료 체납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담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의 귀책사유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수급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급여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보험료 체납의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현(現) 근로자 지원제도 개선필요성

□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들은 세부운영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지원제도들은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료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여전히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예,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사용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또한 기여금 개별납부의 신청기한을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기여금 개별 납부월의 1/2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3. 현(現) 근로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근로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체납사실통지월과 기여금개별납부월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기간을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둘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간소화 그리고 셋째, 기여금 개별납부의 신청기한과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체납사실통지월과 기여금 개별납부의 가입기간 인정확대

○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 인정확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국민연금성격을 강조하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본연의 취지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강화를 위해 통지대상 체납월의 가입기간을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대효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연대원리를 달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체납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체납사실통지대상월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기여금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고려사항) 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 등으로 가입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 인정 확대로 인해 연금액이 증액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여금개별납부의 가입기간 인정확대)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체납보험료의 1/2(본인의 기여금부분)을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대효과) 기존대로 1/2월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가입기간은 1개월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부담의 완화효과가 있음
- (고려사항)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징수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1/2월)의 인정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규모(연 100명~200명)와 평균적인 납부 개월수(약 10개월)를 고려해 볼 때 기여금 개별납부 인정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원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소요재원이 증가할 수 있음

□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 확인서의 제출 간소화

○ 원천공제 확인서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

해서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공단 재량으로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대효과) 기여금원천공제사실확인서 제출과정에서의 근로자의 부담이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음

○ (고려사항) 제도 악용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공적자료가 없을 경우 여전히 근로자가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간소화 방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한 확대

○ 근로자의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한을 “월별 납부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금수급연령 이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 (기대효과)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또는 납부능력이 있는 시기)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해당 체납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음

○ (고려사항) 납부시점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여금개별납부도 납부시점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기여금 개별납부 대상기간 확대

○ 현행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 측면에서 월 보험료 전체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기대효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월 보험료의 1/2를 납부하거나 전체를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가입기간 인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을 요구하지 않음

○ (고려사항) 보험료 납무의무자인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회피가 강화되어 이로 인해 근로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 전체를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노사 간 사회연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재원마련방안

○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1/2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는 방안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또는 별도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국고지원방안을 제안함

○ (국민연금기금활용방안) 별도의 재원마련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적을 수 있음. 하지만 기금안정과 다른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함에 있어 국민연금기금에서만 충당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또한 보험료 납부를 회피 등 도덕적 해이 및 성실납부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별도의 기금마련방안)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및 기여금개별납부신청제도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해 볼 때, 임금체불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기금이나 다른 사회연대기금(예,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고지원)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등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추가가입기간 인정에 따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의 책임이 일반 국민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도가 낮을 수 있음

I. 문제제기

1. 연구배경과 목적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일괄 납부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201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약2조원에 달한다.[1)]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체납사실 통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2)] 또한, 통지된 체납 월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라 한다. 기여금의 개별 납부는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는 가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사실상 보험료를 2번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이 절반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으며 본인이 원하더라도 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의 기여금+ 사업장 부담금)은 납부하지 못한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그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체납사업장으로부터 가입자가 직접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체납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역시 대체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나 기여금 개별 납부는 5년 이내라는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

1)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2018년 5월 추출

2) 예를 들어 2017년 1월 분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2월에 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주고 2017년 1월 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0.5개월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줌.

있다.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체납사실 통지 기간 1/2 인정을 2/2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3]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기여금 원천공제 후 보험료 체납에 따른 문제만을 설명하였으나 임금 체불에 따른 보험료 미납의 문제도 함께 다룬다면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진다. 임금 체불이나 도산에 의해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했다면 현재 제도 내에서는 구제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은 있다.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때 발생하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이를 2/2로 늘린다면 결국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자칫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관한 통계적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자 한다. 둘째,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가입기간 인정 및 근로자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셋째, 제안된 개선 방안들의 장단점을 근로자 측면과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정리하고자 한다.

2010년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우해봉, 2010)가 단기과제로 수행된 바 있으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제시와 실태조사가 미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며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위원 대표발의, 2017.12.29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 및 근로자 구제에 관한 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의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의 직무교재 등을 분석하였고 관련 실무자들과 회의를 거쳤으며 해외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사실 통지기간의 가입기간 인정과 기여금 개별납부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끝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 타당성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체납사업장 관리제도 현황

1. 체납사실통지

가. 의의

「국민연금법」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 즉 기여금을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사업장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90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40조에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도 공제계산서로 본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체납사실 통지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다.

나. 절차

체납 사실 통지가 되는 절차는 다음 〈표 Ⅱ-1〉과 같다. 먼저 최초로 보험료를 미납한 달의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이 이루어진다. 사업주 즉 사용자가 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사업장의 명부를 구축한 다음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이나 납부를 확약한 사업장은 제외하고 전

산에 그 명부를 입력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통지 대상 사업장과 통지 제외 사업장을 구분한 후 체납 사실을 통지할 근로자 파일을 구축한 다음 이를 발송하게 된다.

〈표 Ⅱ-1〉 체납사실 통지 일정

작업 구분	작업 시점	작업 수행
통지대상 사업장 명부 구축	매월 20일 경	본부
체납사실통지서 사전안내문 발송	매월 자료 구축일 이후	본부
납부독려, 발송·제외 처리	매월 자료 구축일 이후 말일까지	지사
발송 최종 자료 구축	다음 달 초일부터 3일간	본부
통지서 제작 및 발송 작업	최종자료 구축 다음날부터 2일간	본부

〈표 Ⅱ-2〉는 사업장이 12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초 체납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처리 절차를 예시한 것이다. 12월분의 보험료는 다음 1월 10일을 납기일로 하며 2월 10일에 납부를 독촉한다. 2월 14일부터 16일에 걸쳐 독촉분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말일까지 발송 대상과 제외 처리 대상을 구분하는 파일을 구축한다.

3월 5일까지 통지서 발송이 완료되면 3월 7일 경부터 근로자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므로 납기일로부터 2달 이후에 보험료 체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체납사실 통지서에는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체납 월 및 체납액,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표 Ⅱ-2〉 체납사실 통지 절차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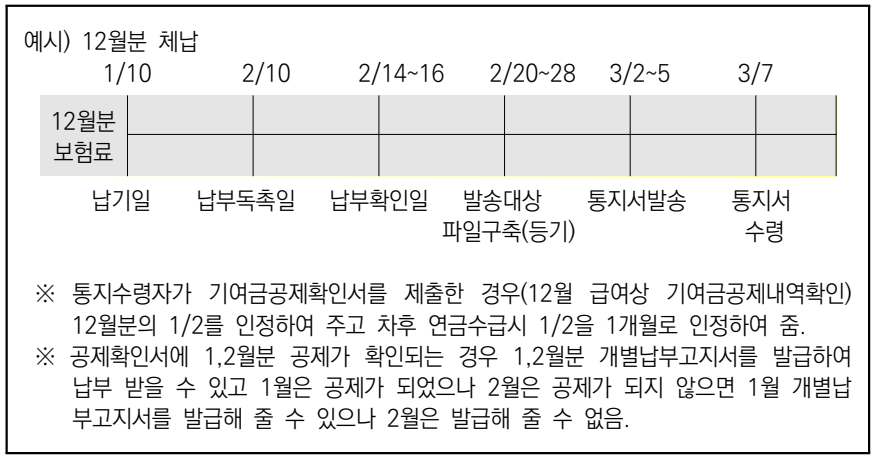

※ 통지수령자가 기여금공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12월 급여상 기여금공제내역확인) 12월분의 1/2를 인정하여 주고 차후 연금수급시 1/2을 1개월로 인정하여 줌.
※ 공제확인서에 1,2월분 공제가 확인되는 경우 1,2월분 개별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 받을 수 있고 1월은 공제가 되었으나 2월은 공제가 되지 않으면 1월 개별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나 2월은 발급해 줄 수 없음.

통지서의 송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지며 가입자의 주소로 보내게 된다. 반송이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지사에서 송달한 장소를 확인하여 재송달(우편 또는 교부송달)한다. 주소지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하며 해당가입자가 퇴사하였거나 사업장이 폐업·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주소를 재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에 재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다.

이와 같이 하여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사용한다. 공시 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4]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4) 국민연금법 제96조 (서류의 송달)

공고의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게시판과 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게시판과 관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병행 공고한다.

다. 통지의 내용 및 효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체납사실 통지의 내용에는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체납 월과 체납 액,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는 체납사실 통지서가 가입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체납사실 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때부터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체납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월에 대하여 기여금이 원천 공제된 경우에는 체납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준다.

2.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월)에 대한 가입기간 산입

가. 내용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고 되어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즉 전술한 예와 같이 12월분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납기일인 1월 10일에서 2달 후인 3월 초에 체납사실을 통지 받는다면 12월에 대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나.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의 제출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여금이 원천공제 되었다는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증명서로 판단하는 자료는 1) 기여금 공제 확인서 및 대표자의 직인이 있는 공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3) 월급명세서 등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후술하게 될 기여금의 개별납부를 위해서도 이러한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3. 기여금 개별납부

가. 의의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한해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중 자신의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따라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원천공제납부에 대한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 임금에서 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국민연금법 제90조)[5]. 일반적으로

5)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6. 5. 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와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피보험자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용자에 대한 “이질부담”이 허용된 것이다(전기철, 2013). 전기철(2013)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인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질부담의 허용 즉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납부의무에 대한 근거는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연대원리는 소득이 많은 자와 소득이 적은 자간의 재정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6]. 또한 사회연대원리는 보험의 급여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제3자 즉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전기철, 2013)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연금이 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즉 납부기간은 연금수급권 발생과 수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7].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국민연금법 제17조), 따라서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체납월은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자의 급여 수급권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개별적으로

5. 21.〉[제목개정 2009. 5. 21.]

6)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내용 참고함

7)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을 반영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주요 연혁

기여금 개별납부는 1998.12.31. 국민연금법 개정당시 마련된 제도로 제도도입 이후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간을 명확화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가입자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가입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왔다.

먼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1998.12.31. 제도도입 당시에는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2000년 12월 23일 이후부터 '통지 이후 발생되는'을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으로 개정하여 기여금 개별납부의 신청기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송달지연에 따라 개별납부 대상기간이 추가되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체납사실 통지의 송달 지연에 따라 가입기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가입자의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기여금 개별납부기한과 관련하여 1998.12.31 제도도입 당시에는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이후 2007.12.31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납사실통지 대상월 이후 미납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입기간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8.6.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기한을 추가 확대하였다.

〈표 II-3〉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기간 관련 법 개정사항

국민연금법(1998.12.31)	국민연금법(2000.12.23.)
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加入期間"이라 한다)은 .....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1995·1·5, 1998·12·31〉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加入期間"이라 한다)은 .....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1995·1·5, 1998·12·31〉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신설1998.12.31, 2000.12.23〉

한편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체납월이 1999.4.1. 이후인 경우 적용되며, 1999.4.1. 이전에 발생된 체납월에 대해서는 보험료 개별납부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즉 보험료 개별납부제도는 기여금 개별납부제도 마련과정에서 도입된 경과규정으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 마련 당시에 특정요건을 갖춘 사업장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 전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료 개별납부제도에 의하면 탈퇴된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가 연금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보험료 전체 즉 기여금과 보험료를 합하여 개별납부 할 수 있다. 적용체납월은 국민연금 보험료 도입시점인 1988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이다.

〈표 Ⅱ-4〉 보험료 개별 납부제도와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 비교

구 분	보험료 개별 납부제도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
적용 요건	- 특별관리(또는 관리종결) 지정 사업장의 가입자이었던 자 중 ·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 · 개별 납부로 연금 수급권 발생 · 공단에 개별 납부 신청 및 수리	- 임금에서 기여금 원천공제 - 체납 사실 통지에 의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체납 월
납부 금액	- 연금보험료 9% 전액(기여금 + 부담금 + 퇴직전환금 합계액)	- 가입자의 기여금(4.5%)
적용 체납 월	- 1988년 1월 ~ 1999년 3월분까지	- 1999년 4월 이후 체납 월
가입 기간 인정	- 개별 납부 기간(월)을 그대로 인정	- 개별 납부 기간(월)의 1/2 인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 주요 내용

기여금 개별납부의 신청대상기간과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체납사실통지 이후 체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발생한 체납월이다. 신청기한은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며, 별도의 연체금은 징수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납부자 본인이 희망하는 날로 지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여금개별납부제도는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이 원천 공제된 경우 기여금을 개별납부하고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이 원천 공제되지 않은 경우 개별납부는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근로자가 기여금과 사용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기여

금 개별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이 원천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대표자의 확인이 있는 ① 기여금 공제확인서 또는 공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③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 공제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개별납부를 한 기간에 대해 추후 사용자의 납부 또는 공단의 징수 등에 의해 체납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중복되어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개별 납부한 금액을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Ⅲ.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실태

이장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세부적인 실태를 통계자료와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통계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사업장 체납현황

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현황

다음 〈표 Ⅲ-1〉은 사업장 체납보험료 연도별 징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자료이다. 2013년 국민연금 부과금액은 총 27조9천억원이며 이 중 27조3천억을 당년도에 징수해 징수율은 97.9%였다. 보험료 부과금액에 대한 당년도 징수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8%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며, 매년 2%가량이 당년도에 징수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 사업장 체납보험료 연도별 징수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부과금액		납기 내 징수		당년도분 징수		당년도분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14,390	279,293	13,662	261,526	15,425	273,417	97.90
2014	15,165	300,373	14,499	282,092	16,338	294,643	98.09
2015	16,336	319,753	15,821	301,743	17,675	314,252	98.28
2016	17,688	340,989	17,288	321,965	19,278	335,205	98.30
2017	18,726	362,626	18,335	341,661	20,312	355,435	98.0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다음 〈표 Ⅲ-2〉는 사업장 체납보험료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다. 당년도분 체납금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5천억원 가량에서 2017년에는 약 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당해년도에 체납된 금액은 연도가 지난 후에도 납부할 수 있어 일정 부분 해소되지만 만약 장기간 납부되지 못하면 누적 체납액으로 쌓이게 된다. 2017년 현재 누적 체납액은 2조 1천억원 규모이다.

〈표 Ⅲ-2〉 사업장 체납보험료 연도별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연도	당년도분 체납		누적 체납액		누적체납 증가분 (금액)
	건수	금액	사업장	금액	
2013	-	5,876	405,483	16,982	-
2014	-	5,730	437,434	18,836	1,854
2015	-	5,501	455,463	19,469	633
2016	-	5,784	476,276	20,380	911
2017	-	7,191	503,947	21,215	835

나. 사업장 종류별 현황

다음으로 사업장 종류에 따른 체납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 4월 10일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전산자료를 추출한 결과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사업장 개소수도 가장 많고 전체 금액면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8] 그러나 사업장 1개 당 금액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개소당 약 250만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으나 500인 이상 사업장의 1개소 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억원으로 규모면에서 컸다.

8)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관한 통계(국민연금공단, 2018)를 보면, 사업장 수로 따졌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가입 사업장의 약 71.6%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체납 사업장의 개소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동 중인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가동 중 사업장이 25만7천개소, 휴·폐업 사업장이 24만9천개소로 가동 중 사업장이 다소 많았으며 금액은 가동 중 사업장이 8,700억원, 휴·폐업사업장이 1조3천800억원으로 휴·폐업 사업장의 체납규모가 더 컸다.

〈표 Ⅲ-4〉는 가동 중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으로 구분해 체납월수별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사업장 수로 보았을 때는 1개월 체납이 가장 많지만 개월수로 따졌을 때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 규모는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체납기간을 가진 사업장이 역시 가장 컸다. 가동 중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 모두 마찬가지였다. 체납금액과 체납월수는 25개월 이상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6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2천700억원이었으며 이중 1천5백90억원이 휴·폐업 사업장의 장기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의 체납급액별 현황을 보면 사업장 수는 5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동 중 사업장과 휴폐업사업장 모두 사업장 개소수와 개월수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 사업장 규모별 체납 현황

(단위: 개소, 개월, 억원)

구분	계			가동 중			휴·폐업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계	506,600	3,677,971	22,535	257,421	1,497,488	8,713	249,179	2,180,483	13,823
5인 미만	391,299	2,773,601	9,946	208,303	1,312,936	5,040	182,996	1,460,665	4,906
5~9인	75,344	608,886	5,211	33,335	135,879	1,642	42,009	473,007	3,569
10~29인	33,849	256,010	4,574	13,487	42,657	1,196	20,362	213,353	3,378
30~49인	3,548	23,373	1,002	1,293	3,353	263	2,255	20,020	739
50~99인	1,888	11,669	917	736	1,917	288	1,152	9,752	629
100~499인	647	4,333	783	253	726	234	394	3,607	549
500인 이상	25	99	102	14	20	50	11	79	52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8.4.10. 전산추출

〈표 Ⅲ-4〉 체납월수별 현황

(단위: 개소, 개월, 억원)

구분	계			가동 중			휴·폐업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계	506,600	3,677,971	22,535	257,421	1,497,488	8,713	249,179	2,180,483	13,823
1개월	146,950	146,950	1,020	101,813	101,813	779	45,137	45,137	241
2~3개월	103,970	249,643	1,896	56,223	133,218	1,083	47,747	116,425	813
4~6개월	79,414	386,565	2,785	32,763	157,782	1,055	46,651	228,783	1,730
7~12개월	87,330	798,469	5,292	34,236	313,324	1,942	53,094	485,145	3,351
13~24개월	**61,504**	**1,050,087**	**6,231**	**22,224**	**373,936**	**1,974**	**39,280**	**676,151**	**4,257**
25~36개월	16,713	490,894	2,587	5,561	163,566	751	11,152	327,328	1,836
37개월이상	10,719	555,363	2,724	4,601	253,849	1,129	6,118	301,514	1,595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8.4.10. 전산추출

〈표 Ⅲ-5〉 체납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개월, 억원)

구분	계			가동 중			휴·폐업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계	506,600	3,677,971	22,535	257,421	1,497,488	8,713	249,179	2,180,483	13,823
500만 원 미만	395,570	1,756,223	5,365	216,984	806,489	2,586	178,586	949,734	2,779
500~1000만 원 미만	57,618	794,850	4,050	22,285	296,113	1,553	35,333	498,737	2,497
1000만 원~1억 원 미만	52,439	1,097,900	11,304	17,750	382,073	3,828	34,689	715,827	7,476
1억 원 이상	973	28,998	1,816	402	12,813	745	571	16,185	1,07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8.4.10. 전산추출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 〈표 Ⅲ-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사업장 종류별로 보았을 때 사업장 수와 체납개월수, 체납금액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동 중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 모두 공통적이었다.[9)]

지역별 체납 상황은 〈표 Ⅲ-7〉에 나타내었다. 동월 기준으로 2016년 1월과 2018년 1월의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경우가 체납사업장의 수가 많았고 체납월수도 많았으며 체납된 총금액도 컸다. 이는 당년도분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일정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표 Ⅲ-1〉과 〈표 Ⅲ-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해 2% 가량이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못하고 이것이 수년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 규모가 매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같은 상황이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체납 규모가 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된 전북의 익산·군산 지역과 경상남도 거제 지역과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체납상황이 심각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므로 특히 이 지역의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9)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사업장 종류별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현황에서 이들 업종이 가입자 수 면에서 또한 가입 사업장 개소수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 개소수 비율은 15%,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31%이며 가입자수 비율은 제조업이 30%,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18%를 차지한다(국민연금공단, 2018).

〈표 Ⅲ-6〉 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개월, 억원)

구분	계			가동 중			휴·폐업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계	506,600	3,677,971	22,535	257,421	1,497,488	8,713	249,179	2,180,483	13,823
농·임·수렵 및 어업	3,149	21,140	97	1,849	11,617	53	1,300	9,523	43
광업	463	5,447	32	156	1,544	8	307	3,903	24
제조업	**120,340**	**1,022,143**	**7,960**	**56,769**	**366,945**	**2,819**	**63,571**	**655,198**	**5,14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54	1,564	8	149	675	3	105	889	5
건설업	58,632	475,995	3,167	24,138	147,914	896	34,494	328,081	2,27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6,268**	**1,044,318**	**4,344**	**96,364**	**484,771**	**1,944**	**79,904**	**559,547**	**2,400**
운수·창고·통신업	8,738	59,853	365	4,754	26,753	173	3,984	33,100	19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58,982	507,183	2,945	30,654	221,934	1,267	28,328	285,249	1,67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1,814	183,150	1,295	19,188	92,794	602	12,626	90,356	693
미분류	47,960	357,178	2,322	23,400	142,541	947	24,560	214,637	1,375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8.4.10. 전산추출

〈표 Ⅲ-7〉 지역별 현황 (상단 2016년 1월, 하단 2018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개월, 억원)

구분	계			가동 중			휴·폐업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계	462,532	3,239,619	21,280	244,991	1,276,804	7,694	217,541	1,962,815	13,585
	518,939	3,681,289	22,746	265,750	1,508,435	8,822	253,189	2,172,854	13,924
서울특별시	121,539	944,754	6,228	61,594	382,539	2,252	59,945	562,215	3,975
	126,834	991,081	5,891	64,010	408,823	2,252	62,824	582,258	3,639
부산광역시	26,419	164,205	1,001	13,846	56,775	320	12,573	107,430	681
	30,142	185,183	1,068	15,676	73,463	398	14,466	111,720	670
대구광역시	14,743	87,938	499	7,880	33,383	180	6,863	54,555	319
	18,224	111,612	605	9,854	49,587	259	8,370	62,025	347
인천광역시	27,692	198,763	1,340	13,200	67,054	406	14,492	131,709	934
	29,570	206,867	1,274	13,634	68,773	407	15,936	138,094	866
광주광역시	10,425	64,013	314	5,826	25,842	122	4,599	38,171	192
	12,380	76,526	385	6,530	31,974	168	5,850	44,552	216
대전광역시	9,987	60,343	342	5,710	23,664	119	4,277	36,679	223
	11,667	73,467	387	5,939	29,121	147	5,728	44,346	239
울산광역시	7,236	40,796	359	4,079	15,684	133	3,157	25,112	226
	8,889	50,111	559	4,682	20,461	268	4,207	29,650	291
세종특별자치시	1,220	7,131	49	828	4,001	25	392	3,130	24
	1,766	10,857	69	1,127	6,278	37	639	4,579	32

구분	계			가동 중			휴·폐업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사업장	월수	금액
경기도	129,821	962,584	6,334	68,511	380,874	2,338	61,310	581,710	3,996
	148,438	1,139,656	6,894	74,293	461,841	2,591	74,145	677,815	4,303
강원도	11,338	83,593	494	6,426	35,946	205	4,912	47,647	289
	13,163	93,242	485	7,114	41,853	203	6,049	51,389	282
충청북도	11,646	74,014	472	6,537	30,978	182	5,109	43,036	290
	13,468	88,023	541	7,118	39,996	238	6,350	48,027	302
충청남도	16,012	104,094	764	9,201	44,133	305	6,811	59,961	459
	18,726	125,329	860	10,043	55,070	357	8,683	70,259	503
전라북도(익산·군산 포함)	13,465	87,527	491	7,468	33,269	172	5,997	54,258	319
	14,470	96,908	544	7,601	37,870	207	6,869	59,038	336
익산·군산	4,410	29,656	180	2,372	11,393	66	2,038	18,263	114
	4,784	33,589	206	2,393	12,897	79	2,391	20,692	127
전라남도	12,618	76,817	496	6,966	31,198	179	5,652	45,619	317
	14,159	88,196	616	7,331	35,885	242	6,828	52,311	373
경상북도	17,116	93,090	695	9,678	36,465	245	7,438	56,625	450
	20,208	118,589	826	11,268	53,159	328	8,940	65,430	499
경상남도(거제 포함)	26,759	158,798	1,256	14,354	58,478	431	12,405	100,320	825
	30,256	184,796	1,524	15,235	71,380	584	15,021	113,416	940
거제	1,772	8,039	133	1,014	3,462	55	758	4,577	79
	2,675	14,878	297	1,261	6,979	137	1,414	7,899	160
제주특별자치도	4,496	31,159	147	2,887	16,521	82	1,609	14,638	65
	6,579	40,846	218	4,295	22,901	134	2,284	17,945	84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8.4.10. 전산추출

2. 체납사실통지 및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현황

가. 체납사실통지 주요 현황

최근 5년간 체납사실통지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장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17년 1년 동안 약 1백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체납사실통지를 받았고 이 규모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사실통지 사업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2013년 기준 체납사실통지 사업장은 약 29만 개소였으나 2018년 5월 현재 33만 개소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의 근로자 적용기준 완화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 체납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 그리고 체납사실통지가 최초 미납월[10]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소규모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상태로 전환하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업장 1개소당 체납사실통지 인원을 확인한 결과 그 규모가 2013년에는 사업장당 3.8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사업장당 3.3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체납사실통지를 받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가 점차 소규모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0) 사업장이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 향후 보험료에 대해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사실통지 대상 사업장이 된다.

11) 2018.05월 기준 사업장 1개소당 체납사실통지인원이 1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추후 2018년 전체 현황을 토대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8〉 체납사실통지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5
체납사실 통지인원	1,121,612	1,148,919	1,151,422	1,041,774	1,006,082	331,408
체납사실 통지 사업장수	295,014	297,943	310,502	305,784	309,353	331,408
사업장당 통지인원	3.8	3.9	3.7	3.4	3.3	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나.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주요 현황

1) 일반현황

다음으로 체납사실통지를 받은 근로자 중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 현재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한 근로자의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이후 다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체납사실통지인원 대비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그 비중이 평균적으로 0.1% 내외로 낮았다. 즉 체납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체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제도를 활용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Ⅲ-9〉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5
체납사실 통지인원 (A)	1,121,612	1,148,919	1,151,422	1,041,774	1,006,082	331,408
1년 단위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 제출인원 (B)	1,348	2,833	1,082	1,390	793	171
(월평균)	112.3	236.1	90.2	115.8	66.1	34.2
A/B	0.12	0.25	0.09	0.13	0.08	0.05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의 인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및 연령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5월 기준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57.89%, 여성의 비중은 42.11%로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현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 참고).

〈표 Ⅲ-10〉 성별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5
전체	인원	1,348	2,833	1,082	1,390	793	17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인원	745	1,660	648	933	503	99
	비중	55.27	58.60	59.89	67.12	63.43	57.89
여성	인원	603	1,173	434	457	290	72
	비중	44.73	41.40	40.11	32.88	36.57	42.1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그림 1] 성별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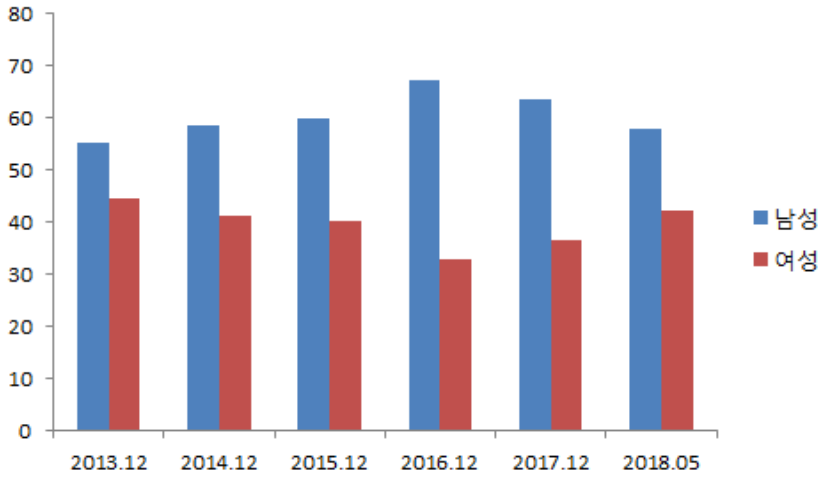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그림 2] 성별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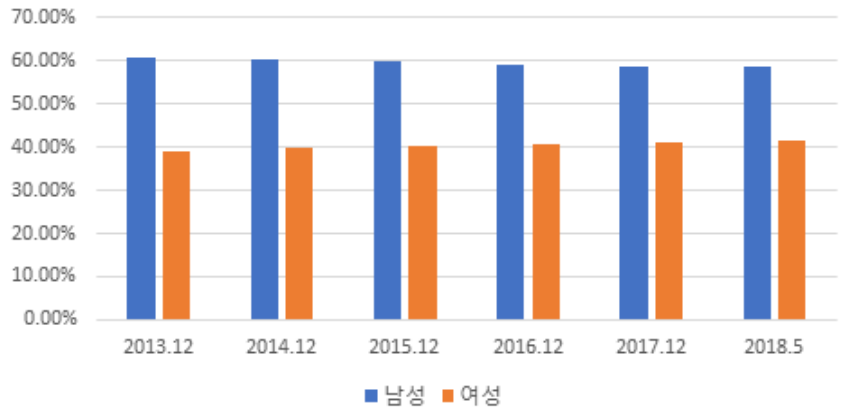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

다음으로 연령별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월 기준 30대는 26.32%, 40대는 30.41%, 50대는 33.33%, 그리고 20대는 9.94%로 40대와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연령별 현황에서는 30대(35.11%)와 40대(27.97%)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는 18.63%로 비중이 낮았다. 그리고 30대와 40대의 제출 비중이 높은 결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현황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가입자들은 주로 30대와 40대이며, 그 다음으로 50대의 비중도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비중이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50대, 20대순으로 그 비중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그림 4〉 참고),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근로자의 연령 특성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령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1〉 연령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5
전체	인원	1,348	2,833	1,082	1,390	793	17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대	인원	209	564	222	264	73	17
	비중	15.50	19.91	20.52	18.99	9.21	9.94
30대	인원	455	846	372	488	229	45
	비중	33.75	29.86	34.38	35.11	28.88	26.32
40대	인원	395	842	272	379	248	52
	비중	29.30	29.72	25.14	27.27	31.27	30.41
50대 이상	인원	289	581	216	259	243	57
	비중	21.44	20.51	19.96	18.63	30.64	33.33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그림 3] 연령에 따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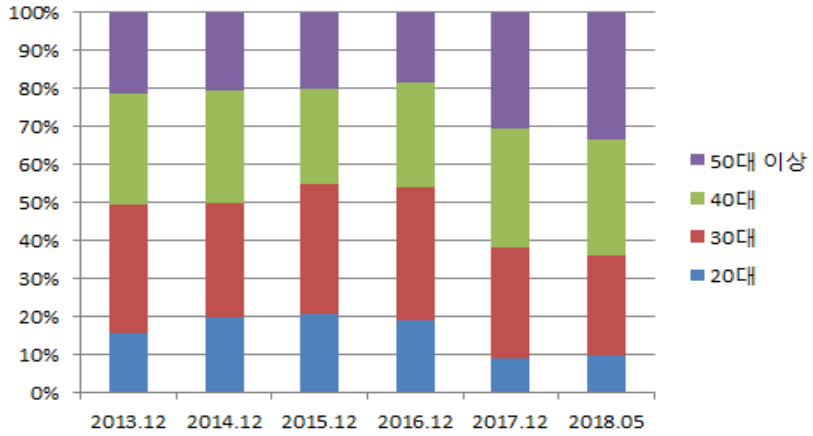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그림 4] 연령별 사업장가입자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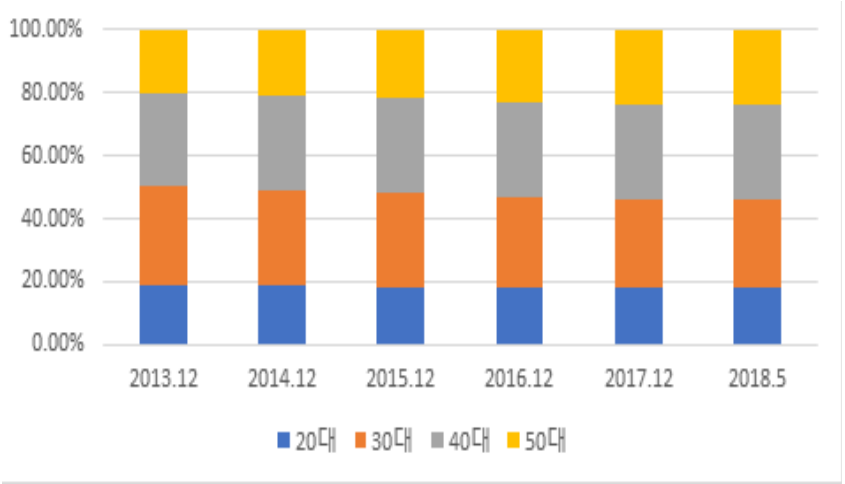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 세부현황

다음은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당시의 가입기간과 근무했던 사업장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당시의 가입기간을 살펴본 결과 2017년 말 기준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의 비중이 전체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793명) 중 51.95%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120개월에서 180개월 미만이 23.83%로 10년 미만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80개월에서 240개월 미만이 13.75%, 240개월 이상이 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월 기준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자들의 가입기간 현황도 이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즉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가 전체 대상(171명) 중 57.8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2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가 20.47%으로 나

타났다.

〈표 Ⅲ-12〉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가입기간 분포〈2017〉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793	412	189	109	83
	비중	100.00	51.95	23.83	13.75	10.47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기준 납부월수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Ⅲ-13〉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성별 분포〈2018.05〉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171	99	35	21	16
	비중	100.00	57.89	20.47	12.28	9.36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기준 납부월수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말 기준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에서만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동일하였고 다른 가입기간에서는 모두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았다. 2018년 5월 기준 현황에서도 모든 가입기간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이 결과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경제활동에 근거하고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국민연금가입비중이 높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14〉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성별 분포〈2017〉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793	412	189	109	83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남성	인원	503	206	142	82	73
	비중	63.4	50.00	75.13	75.23	87.95
여성	인원	290	206	47	27	10
	비중	36.6	50.00	24.87	24.77	12.05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기준 납부월수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Ⅲ-15〉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성별 분포〈2018.05〉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171	99	35	21	16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남성	인원	99	51	21	13	14
	비중	57.9	51.52	60.00	61.90	87.50
여성	인원	72	48	14	8	2
	비중	42.1	48.48	40.00	38.10	12.50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기준 납부월수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의 연령별 가입기간을 살펴본 결과 먼저 2017년 말 기준 20대는 모두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했고, 30대도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가 70.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120개월 미만이 33.47%, 12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이 35.0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50대는 120개월 미만이 38.65%, 240개월 이상이 26.57%로 나타나 가입기간에서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도 120개월 미만이 41.67%, 240개월 이상이 25%로 50대와 비슷하게 가입기간의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2018년 5월말 기준 연령별 가입기간 현황을 2017년도 현황과 비교한 결과 20대부터 40대까지는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 5월 기준 50대는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40개월 미만은 8.1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 2017년 기준 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Ⅲ-16〉 연령에 따른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가입기간〈2017〉

(단위: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비중)	~119개월	120개월~ 179개월	180개월~ 239개월	240개월~
20대 이하	73	73	0	0	0
	100.00	100.00	0.00	0.00	0.00
30대	229	161	61	7	0
	100.00	70.31	26.64	3.06	0.00
40대	248	83	87	59	19
	100.00	33.47	35.08	23.79	7.66
50대	207	80	34	38	55
	100.00	38.65	16.43	18.36	26.57
60대	36	15	7	5	9
	100.00	41.67	19.44	13.89	25.00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Ⅲ-17〉 연령에 따른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들의 가입기간〈2018.05〉

(단위: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비중)	~119개월	120개월~ 179개월	180개월~ 239개월	240개월~
20대 이하	17	16	1	0	0
	100.00	94.12	5.88	0.00	0.00
30대	45	34	8	1	2
	100.00	75.56	17.78	2.22	4.44
40대	52	24	11	9	8
	100.00	46.15	21.15	17.31	15.38
50대	49	24	12	9	4
	100.00	48.98	24.49	18.37	8.16
60대	8	1	3	2	2
	100.00	12.50	37.50	25.00	25.00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을 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연령과 가입기간에서는 그 분포가 다소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30대에서 50대인 가입자가 주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었으나 동일한 연령대에서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비중이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과 가입기간 분포는 조사 시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성별에 따라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양상이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령과 가입기간의 경우 어느 특정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 가입자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보다 더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현황파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8〉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7)

(단위: 명)

가입기간 / 연령	남성					여성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20대 이하	30	30	-	-	-	43	43	-	-	-
30대	166	110	53	3	-	63	51	8	4	-
40대	167	35	68	49	15	81	48	19	10	4
50대	122	26	18	28	50	85	54	16	10	5
60대	18	5	3	2	8	18	10	4	3	1
계	503	206	142	82	73	290	206	47	27	10

〈표 Ⅲ-19〉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8.05)

(단위: 명)

가입기간 / 연령	남성					여성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20대 이하	10	9	1	-	-	7	7	-	-	-
30대	33	23	7	1	2	12	11	1	-	-
40대	28	9	8	5	6	24	15	3	4	2
50대	24	10	4	6	4	25	14	8	3	-
60대	4	-	1	1	2	4	1	2	1	-
계	99	51	21	13	14	72	48	14	8	2

다음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 5월 기준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살펴본 결과,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원천공제확인서 제출비율이 높았다. 또한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유형이 대부분 제조업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앞서 체납사실통지가 발송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소규모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험료가 체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을 통해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0〉 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7〉

(단위: 개소)

구 분	계	농·임·수렵 및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회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업	기타
1인~5인	76	-	-	25	-	12	14	5	13	3	4
5인~9인	66	1	-	26	-	5	16	5	8	3	2
10인~49인	116	-	-	49	-	13	16	8	24	3	3
50인~99인	29	-	-	12	-	2	2	-	12	1	-
100인~499인	17	-	-	10	-	2	1	-	4	-	-
500인 이상	-	-	-	-	-	-	-	-	-	-	-
계	304	1	-	122	-	34	49	18	61	10	9

※ 근로사업장의 규모는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월의 사업장근로자 규모를 의미함

〈표 Ⅲ-21〉 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8.05)

(단위: 개소)

구 분	계	농·임·수렵 및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회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기타
1인~5인	20	-	-	7	-	3	2		4	3	1
5인~9인	15	-	-	5	-	3	1	1	2	-	3
10인~49인	31	-	-	18	-	4	1	5	3	-	-
50인~99인	7	-	-	2	-	-	-	3	2	-	-
100인~499인	2	-	-	1	-	-	-	-	1	-	-
500인 이상	1	-	-	-	-	-	-	-	1	-	-
계	76	-	-	33	-	10	4	9	13	3	4

※ 근로사업장의 규모는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월의 사업장근로자 규모를 의미함

3. 기여금개별납부현황

가. 일반현황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자 규모를 살펴본 결과 규모의 변동은 있으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에는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 인원이 월평균 6명이었으나 2018년 5월 기준 약 2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여금 개별납부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기준 기여금 개별납부월수는 월평균 약 58개월이나 2018년 5월 기준 약 11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는 개인들의 1인당 평균적인 납부월수는 평균적으로 10개월 이내였으며, 평균적인 납부액은 약 6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22〉 기여금개별납부 신청 현황

(단위: 명, 월, 원)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5
신청인원	76	158	113	140	225	99
(월평균)	6.3	13.2	9.4	11.7	18.7	19.8
납부개월	704	1,324	1,105	1,279	2,074	592
(월평균)	58.7	110.3	92.1	106.6	172.8	118.4
1인당 평균 납부개월	9.3	8.4	9.8	9.1	9.2	6.0
납부금액	45,826,490	108,503,230	76,648,980	111,691,350	156,300,450	42,924,150
1인당 평균 납부금액	602,980	686,729	678,310	797,795	694,668	433,577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2013년 이후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하는 근로자 중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연령별 기여금개발납부 신청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50대이상에서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여금개별납부의 신청비중이 여성이 높고 50대 이상에서 높은 본 연구결과는 연금수급연령에 근접한 중년층의 여성이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Ⅲ-23〉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5
전체	인원	76	158	113	140	225	9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인원	38	75	57	66	100	37
	비중	50.00	47.47	50.44	47.14	44.25	37.37
여성	인원	38	83	56	74	125	62
	비중	50.00	52.53	49.56	52.86	55.31	62.63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그림 5]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 성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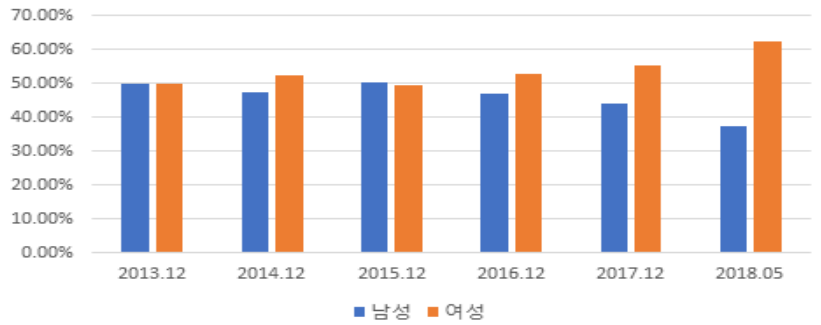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Ⅲ-24〉 연령별 기여금개별납부 신청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5
전체	인원	76	158	113	140	225	9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대	인원	0	37	2	6	9	3
	비중	0.00	23.42	1.77	4.29	4.42	3.03
30대	인원	5	16	10	14	13	7
	비중	6.58	10.13	8.85	10.00	5.75	7.07
40대	인원	11	20	14	16	40	16
	비중	14.47	12.66	12.39	11.43	17.70	16.16
50대	인원	59	79	75	92	151	72
	비중	77.63	50.00	66.37	65.71	66.81	72.73
60대 이상	인원	1	6	12	12	12	1
	비중	1.32	3.80	10.62	8.57	5.31	1.0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그림 6] 연령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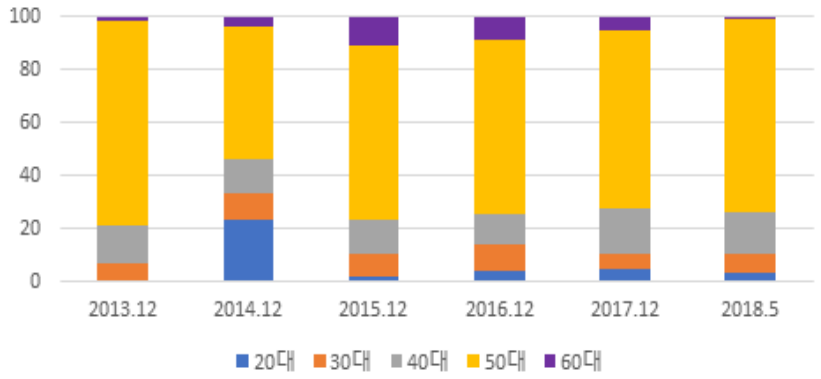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나. 세부현황

다음은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자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기여금개별납부 신청당시의 가입기간과 근무했던 사업장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기여금개별납부 신청당시의 가입기간을 살펴본 결과 2017년 말 기준 120개월(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의 비중이 전체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225명) 중 47.56%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240개월(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가 전체의 20%로 10년 미만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20개월에서 180개월 미만이 17.78%, 180개월에서 240개월 미만이 14.6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월 기준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자들의 가입기간 현황도 이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즉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가 전체 대상(99명) 중 5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4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가 19.19%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 현황〈2017〉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225	107	40	33	45
	비중	100.00	47.56	17.78	14.67	20.00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2017년 4월분의 기여금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Ⅲ-26〉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 현황〈2018.05〉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99	50	16	14	19
	비중	100	50.51	16.16	14.14	19.19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2017년 4월분의 기여금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가입기간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말 기준 24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에서만 남성의 비중(91.11%)이 여성(8.89%)보다 높았고 다른 가입기간에서는 모두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2018년 5월 기준 현황에서도 24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에서 남성의 비중(78.95%)이 여성(21.05%)보다 높았으며, 120개월 미만과 12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경제활동에 근거하고 있어 남성의 가입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남성이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5월말 기준 180개월에서 240개월 미만의 구간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은 2017년 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추후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Ⅲ-27〉 가입기간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들의 성별현황 〈2017〉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225	107	40	33	45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남성	인원	100	26	17	16	41
	비중	44.4	24.30	42.50	48.48	91.11
여성	인원	125	81	23	17	4
	비중	55.6	75.70	57.50	51.52	8.89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2017년 4월분의 기여금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Ⅲ-28〉 가입기간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 성별현황〈2018.05〉

(단위 :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계	인원	99	50	16	14	19
	비중	100	100.00	100.00	100.00	100.00
남성	인원	37	9	4	9	15
	비중	100	18.00	25.00	64.29	78.95
여성	인원	62	41	12	5	4
	비중	100	82.00	75.00	35.71	21.05

※ 가입기간(납부월수)은 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17년 6월에 2017년 4월분의 기여금개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7년 6월 시점의 납부월수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의 연령·가입기간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과 2018년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12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연령이 60대인 기여금개별납부신청자들 중 24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의 비중이 다른 가입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7년의 연금청구연령이 61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결과는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60세 이상의 가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도 수급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29〉 연령에 따른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2017〉

(단위: 명, %)

가입기간 / 연령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20대 이하	9	9	0	0	0
	100.00	100.00	0.00	0.00	0.00
30대	13	10	3	0	0
	100.00	76.92	23.08	0.00	0.00
40대	35	16	8	7	4
	100.00	45.71	22.86	20.00	11.43
50대	133	57	27	22	27
	100.00	42.86	20.30	16.54	20.30
60대	35	15	2	4	14
	100.00	42.86	5.71	11.43	4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Ⅲ-30〉 연령에 따른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2018.05〉

(단위: 명, %)

연령 \ 가입기간	계	~119개월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20대 이하	3	3	0	0	0
	100.00	100.00	0.00	0.00	0.00
30대	7	5	1	0	1
	100.00	71.43	14.29	0.00	14.29
40대	15	8	3	3	1
	100.00	53.33	20.00	20.00	6.67
50대	60	30	9	9	12
	100.00	50.00	15.00	15.00	20.00
60대	14	4	3	2	5
	100.00	28.57	21.43	14.29	35.7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기여금개별납부신청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여금개별납부신청은 주로 연금수급연령에 근접한 50대 이상 가입자의 신청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긴 남성의 비중도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표 Ⅲ-24〉, 〈표Ⅲ-25〉 참고). 이런 결과는 연금수급연령에 근접한 가입자들의 노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는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여금개별납부 신청당시 성별에 따른 가입기간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향후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기준을 개선할 때 성별에 따른 연금수급액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Ⅲ-3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2017〉

(단위: 명)

가입기간 / 연령	남성					여성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20대 이하	3	3	-	-	-	6	6	-	-	-
30대	11	8	3	-	-	2	2	-	-	-
40대	19	4	6	6	3	16	12	2	1	1
50대	48	8	7	9	24	85	49	20	13	3
60대	19	3	1	1	14	16	12	1	3	-
계	100	26	17	16	41	125	81	23	17	4

〈표 Ⅲ-3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개별납부신청자의 가입기간〈2018.05〉

(단위: 명)

가입기간 / 연령	남성					여성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계	~119개월 미만	120개월~179개월	180개월~239개월	240개월 이상
20대 이하	-	-	-	-	-	3	3	-	-	-
30대	2	2	-	-	-	5	3	1	-	1
40대	6	2	1	2	1	9	6	2	1	-
50대	22	4	1	6	11	38	26	8	3	1
60대	7	1	2	1	3	7	3	1	1	2
계	37	9	4	9	15	62	41	12	5	4

[그림 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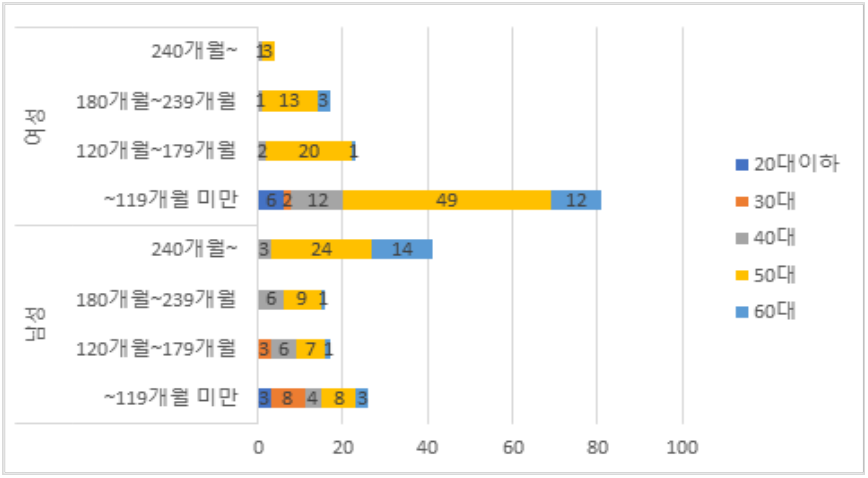

[그림 8]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기간 현황〈20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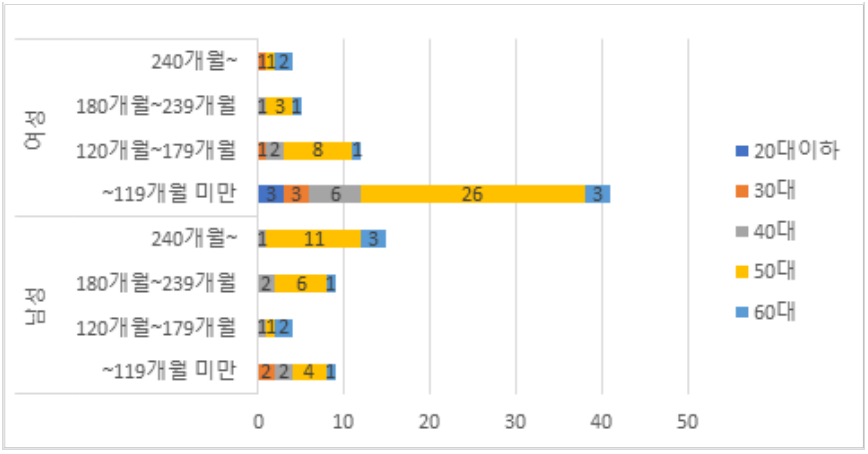

다음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 가입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살펴본 결과,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

여금개별납부 신청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업장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유형이 제조업인 경우 근로자의 개별납부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체납사실통지가 발송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소규모화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업장근로자의 보험료가 체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기여금개별납부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3〉 개별납부신청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7)

(단위: 개소)

구 분	계	농·임·수렵 및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회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기타
1인~5인	55	1	-	16	-	9	14	2	3	8	2
5인~9인	54	-	-	20	-	10	5	4	-	13	2
10인~49인	105	2	-	39	-	8	9	7	3	35	2
50인~99인	22	-	-	4	-	1	2	1	-	14	-
100인~499인	12	-	-	5	-	1	-	-	-	6	-
500인 이상	-	-	-	-	-	-	-	-	-	-	-
계	248	3	-	84	-	29	30	14	6	76	6

※ 근로사업장의 규모는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월의 사업장근로자 규모를 의미함. 개별납부 신청월이 다수월이고, 사업장규모가 변경된 경우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작성

〈표 Ⅲ-34〉 개별납부신청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 유형(2018.05)

(단위: 개소)

구 분	계	농·임·수렵 및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회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기타
1인~5인	28	1	-	16	-	2	3	-	-	5	1
5인~9인	16	-	-	9	-	1	2	2	-	-	2
10인~49인	43	-	-	13	-	3	6	7	-	14	-
50인~99인	2	-	-	1	-	-	-	-	1	-	-
100인~499인	6	-	-	1	-	-	-	-	-	5	-
500인 이상	-	-	-	-	-	-	-	-	-	-	-
계	95	-	-	40	-	6	11	9	1	24	3

※ 근로사업장의 규모는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월의 사업장근로자 규모를 의미함. 개별납부 신청월이 다수월이고, 사업장규모가 변경된 경우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작성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먼저 현행 국민연금의 기여금원천공제 확인서 제출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기여금개별납부제도의 운영취지가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그 취지는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가입자와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는 가입자의 규모가 체납사실통지 인원대비 적은 점, 체납사실통지서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발송되는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

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제도의 취지를 보다 더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을 통한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완화하거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가입자가 수급권 확보를 위해 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다음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황과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체납사업장에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 개요

인터뷰를 위해 조사대상을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은 1) 체납사실 통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한 자, 2) 원천공제 확인서를 미제출한 자, 3)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 자, 4)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 그리고 5) 체납사업장의 회계담당자이다.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각 유형 당 2명씩 총 10명을 인터뷰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였다.

조사 내용에는 먼저 응답자의 일반 현황,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체납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 일반적 사항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총 미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이외에 체납된 4대 보험료는 없었는지, 해당 사업장이 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여 원천공제 확인서 제출 및 기여금 개별납부

에 대한 사항도 질문하였다.

〈표 Ⅲ-35〉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
조사 방법	개별 심층 면접
표 본 수	10명
조사 기간	2018년 9월 28일 ~ 10월 5일
조사 내용	· 응답자 일반현황 · 체납사업장의 현황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인지 · 급여 체불과 국민연금보험료 이외 4대 보험의 체납 · 체납사실 인지 후 사용자와의 관계 · 급여원천공제 확인서의 제출 ·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사항 · 정책 제안 사항

대상자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였으며 이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체납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가 3명, 11명이상 30명이하 사업장 종사자 2명,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가 4명, 10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1명이었다.

〈표 Ⅲ-36〉 조사대상자 세부사항

	성별	나이	업종 업무	근로자 수	분류 유형
1	남	30대	IT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30명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
2	여	40대	제조업 설계	10명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
3	남	40대	목업 제조업 제작 생산	50명	원천공제확인서 미제출자
4	남	40대	인터넷설치 및 서비스 인터넷설치	60명	원천공제확인서 미제출자
5	여	50대	콜센타 상담응대	10명	기여금 개별 납부 신청자
6	남	40대	인터넷주소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10명	기여금 개별 납부 신청자
7	남	50대	인터넷주소 사업 법무 담당	15명	기여금 개별납부 미신청자
8	여	50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80명	기여금 개별납부 미신청자
9	남	30대	광고업 인사, 총무	60명	사업장 회계 담당자
10	여	50대	운수업 경리	110명	사업장 회계 담당자

나. 조사 결과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조사 대상자 10명 중 9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으며 이중 사업장의 회계 담당자 역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여성 58세,

"4대 보험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라서 표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느 회사든 정규직은 4대 보험을 다 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4대 보험은 명시되는데 사전에 공제하고 세후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선 공제 원천징수 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한 대상자의 경우도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보험 가입은 입사를 하면 해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자수 110명의 사업장의 경우만 노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회사 내에 노조는 없다고 답하였다.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뿐만 아니라 압류 소송 등이 함께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에 관한 사항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회사 내에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특정 직원만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는 없고 모든 직원이 해당되므로 체납 사실은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부만 인지하는 사안은 아니었다. 특히 회사에서 체납사실을 알려주고 처리 방향 등을 전체 직원을 상대로 공지해 준 경우도 있었다.

"집으로 통지서가 오니까"

"전 직원이 미납됐다는 통지서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전체 통지를 했었거든요"

"공단에서 쪽지가 날아 와서 알았어요. 계속 체납이 되니까 여러 번 오죠."

보험료 체납 기간은 2달에서 8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부터 체납되는 장기간 체납 상태인 경우도 있었고 2~3개월간의 체납이 반복되는 형태도 발견되었다.

"2017년 10월 입사때부터 현재까지 미납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그 사실에 관한 일정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정확한 체납 기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납부를 했어요.(체납된 보험료는 얼마인지) 몰라요. (몇 달이나 체납되었는지도) 전혀 몰라요. 급여 명세서를 받지 않아서 모르고"

"마지막에 제 기억으로 3개월 정도 같아요. 앞의 두 번은 완납되었고 마지막 게 완납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최근에 확인 했을 때는 8개월 정도 체납 된 걸로 알아요."

"2010년 7월부터 미납됐네요. 2018년 9월까지겠죠"

"15개월 일했는데 한 번도 안 냈어요. 회사는 40개월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보험료가 얼마가 부과되는지 정확한 액수는 알

지 못하고 있었으며 체납 보험료의 규모를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급여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절반에 해당하는 4.5%가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내는 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월 25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급여를 한 달 치를 다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걸 공제를 한다고 해야 할지 안 한다고 해야 할지 표현하기 애매하죠"

4대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체납 통지서를 받았으나 체납 기간이나 체납 금액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재납부까지 소요기간이 2개월~3개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사업장 담당자나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험료 '지각 납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체납관련해서 직원들이) 연락들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납부) 요구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체불이 된다 하더라도 통지서는 가지만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현재로써는 없잖아요"

"(체납 관련 노사간 갈등) 크진 않아요. 기사들이 기관에 진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노조도 장기간 체납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밀렸던 거(두 달치) 안고 가는 거 (이해하는 것 같다)"

한편, 동일한 회사인데 회사명과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체납 보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멸되면서 그에 대한 피해는 근로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회사가 계속 바뀌었어요. 같은 회사인데 회사명이 바뀌잖아요. OO 1685 → OO통신 → OO다이렉트 → 중소상호 지원단 등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사도 여러 번", "회사가 바뀌니까 (체납보험료) 낼 수도 없어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이 사업장의 경우는 과거에 직원들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미납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1/12로 나눠서 매월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사업자 회계 담당자 대부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회사, 어려워요.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죠. 영업이익도 없을 거고"
"회사가 어려워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급여도 간신히"
"월급 주기도 어려우니까 못 내는 거죠"
"지금 체납도 해결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어렵긴 해요"

외견상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체납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급여

지급이나 보험금 납부를 중시하지 않는 경영마인드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사장님이 다른 계좌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매출이 안 좋아서 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아니었죠.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야근도 하고 하는데 회사는 어렵다고 하는 구조였죠.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의 투자자가 있고 이익을 그 사람들이 먼저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사장들은 힘들어 보지 않았으니까요"

"건물을 사면서 부채를 많이 지다 보니 이자도 나가야 하고, 자기 주머니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 주머니 아니면 써 버리고 없다 이런 식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보험료 체납 상황을 알게 되면 사측에 상황을 문의하고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후 납부를 약속하면서 무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체납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정이 나아지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 이외에 근로자가 노조가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제가 체납 사실을 알고 언제 내줄 거냐? 회사에서는 낼 거다"

"(납부)요구는 항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 팀장님이나 상사 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거 같아요. (납부 여부는) 모르겠어요"

"체납 납부해 달라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 여유가 있으면 내주겠다 말씀 했어요"

"(노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컴플레인 걸어서 같이 면담도 하고 하는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또한, 급여까지 체불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체납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였다. 회사 측이 체납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이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는데 임금까지 체납된 열악한 사업장이었다.

"사원들하고 얘기했는데 다 밀려 있으니까 얘기해도 소용없구나. 다 밀려 있으니까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아는 건데. 월급만 잘 나오면 이번 달에 월급 나오냐 그거 먼저 체크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요구한 적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고 달라고 해도 안 줄 거 같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희가 10명 정도 교대 근무해도 10명 정도는 모여요. 간호부 쪽만 10명 정도 모이면 수시로 내려가서 요구하는데 원장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대표하는 총무 과장이라든지 그분하고 그렇게 했죠. 수시로 다섯, 여섯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먹혀요. 이 사람은 너무 습관적으로 체납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대꾸도 안 해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 된 사람도 이제 (임금체불) 해결했다고 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신경 안 쓰죠"

"3개월 되고 나서 급여도 얘기하고 연금도 체납된 거를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안 내주시니까 내가 내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낼 의식이 1도 없으세요"

체납과 관련한 회사 측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은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나 경영상황이 나쁘니 기다려 달라, 개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무마하는 것이었으며 악성 체납이 아니라 두세 달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양해를 구하면 수긍하고 있었다.

"개인한테 손해 가는 부분은 없고 늦어지고 있지만 회사에서 다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노조가 요구하면)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은 해야죠. 죄송하다 못 내는 거는 죄송한데 이런 식이다 라고 기사들에게 알아듣게 설명도 하고 기사 분들이 또 오래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고)"

사업장 회계 담당자는 회사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한 달을 밀리게 되면 국민연금보험료 액수가 커서 회복이 쉽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체납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하였다.

"처음부터 연체를 일부러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100명 정도 의료보험 합해서 1,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밀리면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죠"

"(4대보험) 3개월 정도 체납이 됐고. 두 달까지도 줄였다가 근래에 4달 정도 체납이 됐다 하는데 석 달이 넘어가면 건강 보험 쪽에서 등기로 매달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연내로는 두 달 안쪽으로 줄이려고"

3) 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근로자 8명 중 3명은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통지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알고 있었다. 체납 통지서의 설명을 읽고 알았다는 경우가 2명이었으며, 1명은 해당 사업장에서 전체 공지를 하고 일괄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하였다. 즉 회사에서 직접 나서서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여 통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해 준 것이다.

"회사에서 공지를 해줬던 거 같아요. 공지를 받으면 인정이 된다고 해서 받았던 거 같아요. 경영팀에서 거의 다 처리해주시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들 저희 회사 직원도 그렇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몰랐던 거 같아요."

근로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사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직접 가서 제 거 연금 제가 내려고 갔었어요. 급여 명세서도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챙겨서 들고 갔죠"

"국민연금 체납됐다고 오면서 개별 납부라는 통지서가 같이 와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 어렵고 너무 많이 장기간 미납되니까 국민연금을 몇 번 찾아갔죠. 무슨 방법이 없냐? 내가 개별적으로 내고 싶다. 나중에 혜택을 받고 싶다. 솔직히 10만원이면 늙어서 큰 돈이거든요"

체납 사실을 통보할 때 원천공제확인에 대한 안내가 있으나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도를 알았더라면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회사에서 공지를 하고 일괄처리를 해준 경우는 오히려 회사 측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천공제확인서 제출과 관련해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근로자도 있었으나 사업장 분위기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느라 어려웠다는 경우도 있었다. 체납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확인서 제출에 협조적이나 급여체불, 보험료 고의 체납 등 심각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원천공제 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사업장에 체납을 해결해 주길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들었어요. 원천 공제 하면서 그거 있는 줄 알았으면 하려고 했겠죠. 회사에서 했으면 내든지 안 내든지 상관없이 인증이 간다는 거잖아요"

"(알았더라도) 체납해결 회사에 요청했고 완납해준다고 답을 들었고 두 번 완납되었으나 완납할 것으로 생각한다(그래서 제출하지 않았을 거다)"

4) 기여금개별납부 제도 관련

기여금개별납부 제도를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문의해 알아낸 경우였다. 체납 통지서에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소개를 보고 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내용을 재확인하여 해당 제도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공단에 찾아 가서 알았죠. 통지서 받고 물어 본 거죠. 개별 납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연말정산을 위해 직접 공단에 문의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알았어요"

"설명서 통지 오고 나서 전화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알고 있는 3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신청을 했고 다른 1명은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청자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내 노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진 거 없고 모아 놓은 거 없으면 기댈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 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내 피부로 와 닿으니까 발 벗고 나서는 거죠"

"내가 내려고 했는데 회사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안내서 인터넷 찾아보니 기여금 저게 있더라고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에 대해 몰랐지만 알았다면 납부를 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노후에 사용해야할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설명들은 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근로자들을 보면 58세 女, 57세 女, 52세 男, 45세 女, 45세 男로 비교적 연령이 높고 공통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다니는 분들이었다.

반면, 개별납부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납부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알아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으며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국민연금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많고 하니까 의구심도 들고"

"보통 하는 얘기들은 아마 우리는 못 받을 거다"

5) 추가 의견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해 근로자들은 체납 사업장(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내 연금에 대한 체납에 대한 조치가 아무 것도 없는 건지, 사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체납이 되면 사업자한테 차압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권한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법으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만들

던가"

"제도적인 강제성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악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체납사업장 근로자 대상 안내', '제도 안내 문자 발송' 등을 제안하였다

"장기 체납된 회사는 공단에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모아 놓고 이런 거 브리핑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개별 납부가 있다. 납입 할 사람은 납입을 하라는 권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체납으로 인해 차후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으면 제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싶거든요"

"국민들한테 문자나 한 통씩 보내줘도 문자 받으면 금방 숙지 할 텐데"

"그 때 얼마 받는다고 고지 해주는데 이때는 많아 보이겠죠. 그때도 많을지 걱정을 하는 거 같아요. 걱정하는 거를 안심 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사정이 어려운 회사는 한 달 단위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크니 반 달치 납부 등 '체납보험료 분납제' 등의 제안도 있었다.

"한 번 밀리면 상쇄하기 힘든 거예요. 무조건 한 달 잘라서만 해주고 연체료를 한꺼번에 3개월치를 통으로 이건 아니죠. 회사 쪽에서는 조금 더 배려가 된다면 반 달 치라도 더 낼 수 있게 해주면"

"고용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끔 안내문이 와요. 체납이 있으니 융자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그런데 회사에서 진행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회사가 급여 밀리고 4대보험 밀려있으면 세금도 연체 되고

있는 경우가 크죠. 4대보험하고 국비 체납 때문에 아예 배제가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되니까"

다. 시사점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 및 사업장의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상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 2명, 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2명,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기여금을 개별 납부 신청한 근로자 2명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2명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체납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장의 회계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함께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황은 확인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어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을 통해 알게 되며 회사 내의 다른 직원들에게 듣고 파악하기도 한다. 체납 사업장의 대부분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미납과 납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체납 금액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체납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회사를 회사명과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면서 체납보험금을 해결하지 않아 그에 대한 피해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이미 공제한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기여금 개별납부를 할 수 있으나 결국 사업장의 기여분 2분의 1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인터뷰에 응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보험료의 체납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자신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 체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공제 확인서 제출에 협조적이나 급여 체불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는 데에 근로자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제도를 잘 알지 못한 경우와 사업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이다.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제도를 이용한 사례였으며 급여까지 체불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은 제도는 알고 있으나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를 통해 체납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우편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휴대전화 문자 등 통지의 방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천공제확인서와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즉 근로자 개인에게 상세한 상담과 설명이 요구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추납과 반납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으므로 기여금 개별납부 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는 구제되어야 하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체납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일부 회사들은 회사명과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중시하지 않는 경영마인드가 큰 문제였으나 대부분의 체납사업장이 노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조선업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시행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에 따라 조선업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종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실태와 보험료 체납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 개요

먼저 조사대상은 조선업 체납사업장의 대표자와 근로자 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사용자는 1) 체납 사유, 2) 급여미납여부, 3) 근로자의 체납사실 인지여부, 4) 향후 보험료 납부계획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근로자는 1) 체납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2) 보험료 체납현황 3)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책, 4) 체납처분 및 추가적 구제방안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대표자 7명, 근로자 6명 총 13명을 인터뷰하였다.

대상 사업장은 총 9개 였으며 이중 4곳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동중 사업장이었고 5곳은 폐업한 곳으로 자격 탈퇴 상태에 있었다. 유지사업장 4곳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모두 면담에 응하였고 탈퇴 사업장 중 3곳은 대표자 즉 사업주만 2곳은 근로자만 면담에 응하였다.

〈표 Ⅲ-37〉 조선업 체납사업장 사례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거제 지역 조선업 사업장 중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사용자 7명 및 근로자 6명	
조사 방법	개별 심층 면접	
조사 기간	2019년 2월 21일 ~ 2월 22일	
주요 조사 내용	사용자	· 급여미납여부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유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향후 보험료 납부계획 등
	근로자	· 체납사실 인지 후 사용자와의 관계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인지 · 정책 제안 사항

나. 조사 결과 - 사용자

1) 임금 및 국민연금 체납실태

대부분의 사용자는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경기악화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다보니 급여, 운영비, 세금 및 4대보험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60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우리가 원래는 기성이라는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고, 복지를 하는데, 급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면 4대 보험을 못 내게 되는데...”

(남성, 52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회사 구조가 퇴직금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 61세,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질문자) 기성금액 받으신 것 중에 인건비 먼저 제하시고"

"(사용자) 네네,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이 우리 공장 임대료,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사업장 운영 상황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주로 원청사업체 또는 1차로부터 계약금액을 적게 받은 것을 언급하였다. 즉 조선업의 경우 발주사-원청-하청 및 재하청의 구조인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청 등에서 조선업 경기 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낮추어 발주를 신청할 경우 하청 사업장에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남성, 61세, 법인 및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부도를 맞기도 했고, 상황이 업체 대 업체 간 공사대금을 받는데 이 돈이 다 합쳐도 부족해서. 일단 임금을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기성을 받고 부가세를 받아도, 이들을 합쳐도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성, 61세,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우리가 기성금액을 받는데 원래 임금비하고 4대 보험비를 다 낼려면, 가령 천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기성(비)을 받으면 천만 원이 안 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금액이 천만 원 받으면 인건

비랑 기타 송금, 공간 작업비하고 딱 나간 게 천만 원 이상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남성, 39세, 개인사업장대표, 사업장 가동중)

"(질문자) 그러면 선생님 사업장이 임금하고 4대 보험료를 근로자분들게 줘야하잖아요. 그럴려면 100이 필요한데, 원청에서 그냥 계약할 때 90으로 하자고 한 적도 있나요?"

"(사용자) 네네."

2)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 여부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 급여 공제여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으며 급여명세서 등에도 이를 기록·관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근로계약서 상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 보험료를 체납할 지라도 추후에 납부하기 위해 원천공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52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질문자) *서류상으로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했다고 기록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한 적은 있으신가요?"*

"(사용자) 그런 것은 없고, 있는 그대로 저희도 신고하고, 단지 신고한 금액에서 4대 보험을 못 내는 것이죠."

(남성, 56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원천징수로 다 나갑니다. 우리는 매월 급여 명세서에 다 적어서 먼저 근로자에게 주고 이상이 있는 사람 확인해주면 경리 분들 오셔서 확

인하고 정정해서 처리했습니다.”

(남성, 61세, 법인 및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신용불량자나 기타의 사유로 그런 경우(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하지않고 급여지급)가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애초에 고용하질 않습니다. 다니던 중에도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내보냈습니다... (증빙서류는) 급여 명세서도 나가고 임금 대장도 있었습니다.”

(남성, 39세, 개인사업장대표, 사업장 가동중)

“(질문자) 일반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걸 월급에서 공제하지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용자) 제가 세무·회계쪽은 잘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임금을 내보낼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근로자의 체납사실 인지 및 반응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이 되면 근로자에게 통지가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근로자들이 보험료 체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는 회사 내 공지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이 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험료 체납사실을 인지한 근로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항의를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로 체납하였음을 알리면 납득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일부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후 사용자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61세, 법인 및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항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건비와 퇴직금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성, 60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처음에는 많이들 항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도 한 달 한 달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표인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급여부터 먼저 집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하고 교육시간 내지, 개인이 왔을 적에 양해를 구하죠."

(남성, 61세,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그분들도 생계를 같이 유지해왔기 때문에 제가 악의로 돈을 못 준다고 해본 것은 없고 내가 이달 유지가 안되니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좀 조정하다가..."

(남성, 52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우리 회사 총무 쪽으로 전화해서 계속 불만을 표하고, 작년에는 몇몇 사람들이 형사 고발조치를 해서 제가 법원에 가서 벌금을 300만 원을 내고 왔습니다."

(남성, 56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저희 직원들이 앞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체불 임금이 8월까지 이어져서 11억 정도 체불이 되어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금 보험료도 같이 적용이 되어서 형을 받았습니다"

4)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계획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으며, 탈퇴사업장 사용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미납보험료에 대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분할 납부하겠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남성, 60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당연히. 사업을 하는 동안 당연히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게 맞고요. "

(남성, 39세, 개인사업장대표, 사업장 가동중)

"지금부터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전에 손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 61세, 법인 및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제가 가진 재산을 팔 수 있는 대로 전부 팔아서 갚아서 지금은 미납 보험료가 2천 200만 원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좀 안되어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 61세,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수익금이 아니어도 내가 중간 중간에 빚이라도 돈을 갚아 나가야되죠. 제가 그렇게 떼먹고 하는 그런 성격은 못 되가지고.....(중략) 저도 지금 부동산 자산으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매매가 잘 안 나가고 있어서... 그게 팔리면 다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 작업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납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터뷰한 결과 한시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용자도 있었고 연체금 면제를 요청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현행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체납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제기한 사용자도 있었다.

(남성, 60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방법을 바꿔주면. 내가 동시에 종업원 것까지 하고 내 것까지 다 내려고 하다보니깐 연체가 높은 수준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이라도 수급을 하는 차원에서 종업원과 사업자 분을 분리해서라도 일정 기간 동안 받아주면 장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던 부분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 61세, 법인 및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보험료를 좀 깎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내지 않게끔 해주시든지."

(남성, 61세, 개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탈퇴)

"지금 조선 경기가 너무 힘들다보니깐 조선 쪽 종사자나 사업자가 모두 마찬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일거리가 될) 물량이 너무 없다보니깐,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안 되니깐 그 점이 힘듭니다"

(남성, 52세, 법인사업장 대표, 사업장 가동중)

"은행에 찾아가도 4대 보험 체납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고, 신

용보증기금에 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필요로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대출이 되기 위해서는)무조건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 조사 결과 - 근로자

1) 체납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근로 형태 즉 정규직과 일용직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두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 보험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였다는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확인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37세 남, 사업장 가동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임금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보통 시급만 확인하고 서명을 해왔습니다. 보통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쇄가 되어있고 시급의 경우가 연필로 적혀져서 나오는데 그 부분만 보통 확인합니다. 시급이 맞게 적혀있으면 볼펜으로 바꿔서 적고 서명을 합니다."

(57세 남, 사업장 가동중)

"(처음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나요?) 따로 적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다 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급여명세서 받으실 때 4대 보험 공제된 것은 항상 확인하고 계시는 거네요.)네."

2) 보험료 체납 현황

근로자들은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을 체납통지서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 미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지 사업장(가동중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는 없었으나 탈퇴 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도 발견되었다. 체불된 임금은 체당금 신청으로 통해 받았다고 답하였다. 체납사업장에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납부를 독촉하거나 항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6세 남, 사업장 가동중)

"실제로 급여에서도 원천 공제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해의 6월이나 7월 쯤에 원천 징수를 하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공단에서 6월이나 7월 달에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지 않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37세 남, 사업장 가동중)

"옆의 업체의 경우는 소장이 대표로 싸워서 (사업주가) 보험료는 다 냈지만 그 사람은 잘렸거든요. 내 위에 관리자가 있는데 근로자가 말해봐야 관리자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대표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40세 여, 사업장 가동중)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 상에 4대보험이 직장 가입으로 의무 사항이 적혀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영 상황 자체가 적자인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막말로 만약 대표님이 진짜 횡령이라도 하실 기미가 보이면 제가 적극적으로 항의할 텐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다른 지출이 하나도 없어도 현재 들어오는 기성금으로 직원들 월급만 지급해도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줄이든지 급여를 줄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 45세 사업장 탈퇴)

"퇴사하면서, 회사가 문을 닫고 나니깐 공단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납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내 급여에서 공제는 다 된 상태이고 회사는 문을 닫아버렸고요. 임금은 하루 이틀 밀리는 때는 있었지만 제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OO 산업에서는 퇴사하기 직전 두세 달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았었습니다. 체불된 금액의 100%가 아닌 70% 정도를 받았습니다."

3)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책

근로자 개별납부 제도에 대해서는 면담자 모두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용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하였다. 나중에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면 몰라도 이미 공제가 되어 내가 내야 할 몫을 회사가 가져갔으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면담자들은 체납사

실 통지 첫 달에 대한 확인서 제출에 관한 내용도 대체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면담자 중 1명이 체납사실 통지 첫달에 대한 확인서 제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탈퇴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알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56세 남, 사업장 가동중)

"사업주가 확인서를 끊어주면 미납된 첫 달은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확인서를 끊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를) 지금 저는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내 급여에서 내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으니 사업주가 내야하고 만약 제가 낸다면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발을 한 다음에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5세 남, 사업장 탈퇴)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알게 되셨는데 신청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제출할 의향이 있죠. (기여금 개별납부에 대해서는)만약 내가 연금 탈 조건이 안되는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납부할 의향이 있습니다."

(37세남, 사업장 가동중)

"대표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연체시키면 되는데 이미 공제를 했다는 자체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납부하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36세 여, 사업장 탈퇴)

"그 돈은 벌써 회사에서 가져간 상황인데 제가 그 부분을 또 내야한다면 안 내죠."

4) 체납처분 및 추가적 구제 방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밖에 추가적 구체방안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근로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먼저 압류처분을 걸면 대출이 막혀 회사 존속이 힘들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체납처분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0세 여, 사업장 가동중)

"지금은 회사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압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존속을 못하면 지금 회사에 있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군식구처럼 다른 회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정이 좀 나아져야지 납부를 하든지 안되면 압류를 걸든지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더 압박해서 대출이 더 막혀버리면 회사 존속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57세 남, 사업장 가동중)

"이 사업장은 유지사업장이므로 우리가 독촉하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조선업에 대해 보험료 유예를 해준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근로자들도 있었다.

(37세 남, 사업장 가동중)

"공단에서 유예기간을 왜 줍니까? 일하는 사람들 보험료를 다 납부해 주도록 해야지 정부에서 조선업 특구라 지정해도 근로자에게 오는 혜택은 없고 전부 업체 대표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업주들은 근로자 급여를 우선으로 해결하다보니 보험료 같은 것은 미납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급하지 않아서 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남, 45세 사업장 탈퇴)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을 하면 공단에서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가 협력업체라고 한다면, 그 위에서 용역을 주는 대우나 삼성같은 원청 기업 안에 협력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 부서에도 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려서 협력 업체가 빨리 납부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세 남, 사업장 가동중)

"근무하던 직장에 독촉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징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체납되면 그 회사 경영상태를 진단 한다던가 법인 지출 내역을 확인하던지 4개월이 넘으면 근로자 단체 분을 공단에서 고발하던지 하는 규정을 만들어 어려가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6세 여, 사업장 탈퇴)

"공단에서 언제까지 유예해주겠다고 하니깐 체납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해야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고 사업주도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Ⅳ.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해외사례 검토

본 장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체납사업장 및 체납사업장에 근로한 자들을 어떤 형태로 관리 또는 운영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국가별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연금형태 및 보험료 체납자를 대응하는 방식이 상이하므로, 비교적 참고할 수 있는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가입자 형태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 보험 제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피용자들은 후생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체납 관련 제도와 절차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연금 보험료가 사회보장세에 포함되어 있어, 체납이 발생할 경우 세금 미납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세법 위반 시 발생하는 제도적 내용을 작성하였다.

1. 일본

가. 제도개요

일본의 연금제도는 가입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층은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영자 등 피용자가 아닌 이들이 주요 가입 대상이다(제1호 피보험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그 세대에 속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2층은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피용자가 가입대상에 해당된다(제2호 피보험자). 이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후생연금에도 가입하며, 제2호 피보험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제3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제3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

고, 이들의 연금급여는 후생연금 가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3층은 후생연금을 보충하는 연금제도로 기업연금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2호 피보험자의 가입의무제도인 후생연금 보험료 체납에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나. 체납 보험료 청구절차

후생연금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인 후생연금보험법 86조 및 건강보험법 181조에 의거하여 청구한다. 기본적으로 체납 발생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법정납부기간이 있어,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독촉장이 송부되며, 지정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체금 또는 독촉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다.

[그림 9] 일본의 체납보험료 청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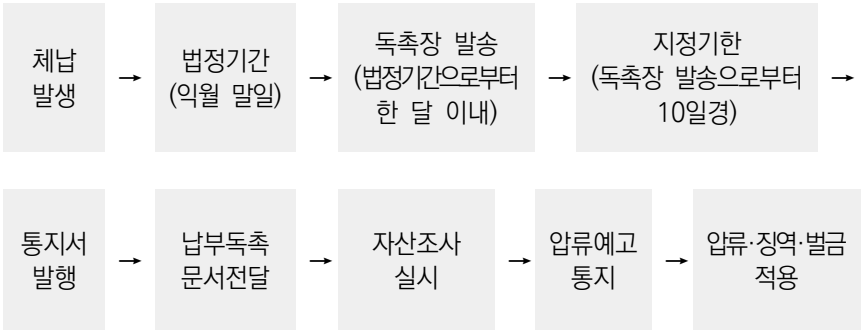

예) 4월분 보험료의 경우
가) 법정기간 : 5월 말일(익월 말일)
나) 독촉장발송 : 6월 15일 경
다) 지정기한 : 6월 25일 경
※ 독촉장 발송부터 10일 후 (후생연금보험법 86조 4항)

따라서 법정납부기간까지 후생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보험료(연체금)에 있어서 연 14.6%의 비율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금 완납 또는 재산압류의 날의 전날까지의 날수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또한 독촉 및 체납처분에 의한 보험료 청구는 사회보험청장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로부터 10일상의 기한을 정하여 발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500엔 미만인 때나 체납에 관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보험료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 납기를 앞당겨 보험료를 선납 징수하여야할 때[12], 납부의무자의 주소나 거소가 국내에 없거나 그 주소 및 거소가

12) 보험료 선납 징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지정기한까지 보험료를 선납할 의무가 있다; 국세·지압세 기타 공과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파산선고를 받은 때, 기업담부권의 실행절차가 개시된 때, 경매의 개시가 있는 때,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해산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된 사업소가 폐지된

모두 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독촉한 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독촉을 받은 자가 지정 기한까지 보험료나 징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후 진행되는 부분은 체납처분으로 간주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거나,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시정촌(市町村)에 대하여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사업주에게 통지서를 발행하여 연금사무국을 방문하도록 권하고, 납부유예, 환가, 분할 납부 등을 설명하고 상담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는 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납부독촉문서를 전달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이 이루어지면 압류예고 통지 절차에 돌입하여, 예축금·급여·기타재산 등을 수색·압류 및 환가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독촉장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이 계속되면 통상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피보험자증이 교부된다. 1년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10할(100%)인「피보험자자격증명서」가 교부될 경우가 있다. 1년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징수금의 독촉장에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자, 대리인 또는 사용자로써 위반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후생연금특례법 개요 및 구조[13)]

일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이 명백하게 보험료 체납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압류·징역·벌금 등을 징수하여 환급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업주가 보

경우 등(후생연금법 제85조)

13) 국민연금연구원 해외출장(2018.6.26.~2018.6.29.) 증 일본후생노동성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험료를 납부했는지 알 수 없고 연금기록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상황에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2007년도에 후생연금특례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가입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후생연금특례법은 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연금사무소에 납부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사업주가 납부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장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후생연금 대상여부 및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여부를 판단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 후, 이에 관한 의견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고, 근로자의 연금기록을 정정하게 된다[14]. 이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금기구에서는 사업주에게 시효가 소멸된 보험료에 상당하는 액수인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된다(1단계).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명을 공표하고(2단계), 4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납부 권장(3단계)한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4단계)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특례보험료 지급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10] 참조).

14)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의견을 득하지 않고도 정정이 가능하다.

[그림 10] 후생연금특례법의 특례보험료 청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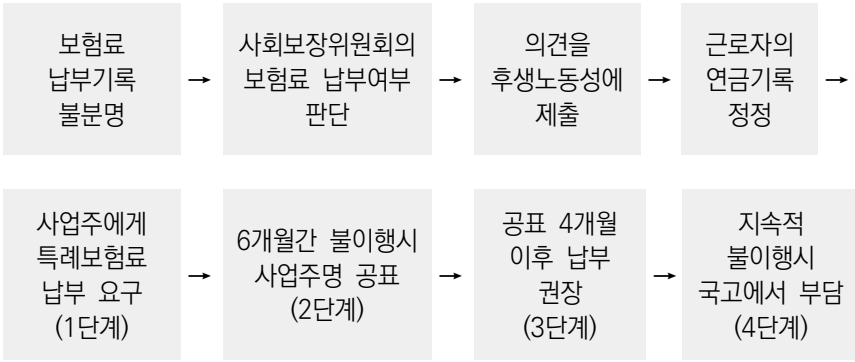

2. 미국[15)]

가. 제도개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인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는 소득재분배 급여산식을 가진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적용 대상은 21세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OASDI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로 과세 적용되어 연금 종류에 따라 노령·유족 또는 장애연금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수급권자가 수급조건에 적용되는 시기에 해당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세 납입자는 연방보험기여법(FICA: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의거한 사회보장세 또는 자영보험료법(SECA: 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에 의거한 자영자 사회보장세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위법으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존재한다.

15)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홈페이지(https://www.irs.gov) 참조.

나. 체납발생 및 처리절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OASDI는 사회보장세로 운영되므로 사회보장법에 의거하여 관리 및 운영된다. 즉,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체납하게 되면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법위반에 적용된다. 이에 사회보장법은 넓은 범위의 처벌(penalty)과 세부 항목인 부정행위(penalty for fraud)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208조에 의하면, 임금, 자영자의 순이익 등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소득 행위를 허위 진술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 행위에 따른 지급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작성 또는 은폐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지급액을 변경 및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등은 사회보장감독관을 기만하는 행위 및 허위 정보 제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는 중범죄로 판결될 수 있으며, 미국 법전 18장(United States Code, Title 18)에 따라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모두 받게 된다.

1) 사회보장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사회보장제도는 미국 노년층의 노후보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여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사용자는 사회보장세를 지급할 때 FICA에 따른 세금납입을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FICA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보수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장세(의료보험 포함)를 분담하여야 한다. FICA의 세금납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지불을 하게 되고, 체납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처음에 체납한 기업은 체납금과 지불기한이 지난 정도에 따라 체납연체금(체납금의 2~25%)을 지불해야한다.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 또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무가 발생한 모든 세금 납부, 범칙금 처벌, 형사 고발 및

구금시설에 연루될 수 있다.

[그림 11] 사회보장세 미납에 따른 청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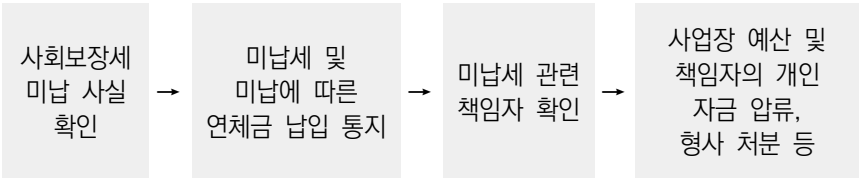

2)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세는 납입하지 않으면,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6672조(a)에 의거하여 납세하지 않은 모든 대상이 책임질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사업체의 형태와 관련 없이 미지불한 사회보장세(급여세 등 모든 체납 세금을 포함한다)에 연루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누구에게든 체납 사회보장세 및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체납의 경우 사업장의 예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책임자의 개인자금을 압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과 법원은 책임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자금 배분을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수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 채권자 지불에 관한 결정을 내일 권한이 있는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 등 세금납입 의무 및 권한을 가진 대상 모두를 지칭한다. 이는 체납에 대한 책임을 관련자가 반드시 지도록 엄격한 기준을 두어, 탈세 및 횡령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보장세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역할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세의 원천징수는 사용자의 책임이나, 사용자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자가 납입해야하는 세금(사회보장세 포함)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납입해야하는 세금에 있어

서는 책임이 없으나, 근로자가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동일하게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체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자 또는 경영진이 책임진다. 반면, 근로자는 국세청에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체납현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체납상황이 확인 되는대로 국세청은 사용자에게 납입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4) 사회보장세 체납 관련 판례

미국은 체납 발생 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소되어 기소된 사법 구역 내의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다음은 2016년도에 각 지역의 법원에서 열람 가능한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① 불법이민자 급여세(payroll tax)[16] 미납에 대한 선고

2016년 9월 8일,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Philip Hui는 15개월 구형을 선고받고, 석방 후 3년간 감독당할 예정이며, $98,864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Hui는 국세청에 급여세 징수 및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정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만 보고하고 불법 체류자 채용사실을 은폐하고 불법 체류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 공동 경영자인 Kathy Lei 또한 이와 같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Lei의 양형도 집행될 예정이다.

② 원천공제를 하였으나, FICA 세금 미납에 대한 선고

2016년 9월 19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Paul Biko는 $437,336의 배상금과 1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문서에

16) 고용주의 급여세는 FICA세금을 포함한 연방 실업세(FUTA Tax)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FICA세금을 포함한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외에 각 주마다 별도의 주정부 세금이 존재한다.

따르면 Biko는 세 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모든 재정 문제를 관리하였다. 그런데 2008년도에 Biko의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세금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연방소득세 및 FICA를 국세청에 지불하지 않아 이에 세금사기(Tax Fraud)를 선고받았다.

③ 前 CEO의 급여세 미납에 대한 선고

2015년 11월 13일, 메릴랜드 주의 William Kristen Hathaway는 24개월의 징역, 6개월의 가택구금, 3년간 감독 및 추적 하에 석방되고 $3,411,375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선고되었다. Hathaway는 마약중독과 정신질환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CEO였고, 이 단체의 이사회는 Hathaway의 친척으로 구성되었다. Hathaway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495,779의 급여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국세청에 자금을 전달하는 대신, 이를 회사지출로 사용하였다. 또한, Hathaway는 퇴직연금 신탁자로 근무하여 퇴직연금 자산을 자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

다. 사회보장세 관리체계

국세청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은 체납 및 탈세를 감시하고 조사한다. 범죄수사국은 부도덕한 세금행위(체납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국관할의 금융법과 해외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직불카드까지 조사할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세금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보고를 수령하면 추가적 검토를 진행한다. 외부의 보고는 신문, 공공기록 및 개인 등 다양한 출처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공된 정보가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 보고서에 채택되어 검토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서의 검토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사항을 우편으로 서면통지하고, 필요시 심사관과 개별면담을 진행한다. 만약 대상자의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정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웃, 은행, 관련 근로자·사용자를 접촉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후 체납이 고의적인지에 대한 세부규정 설정 및 체납에 대한 정의, 체납 시 벌칙(벌금과 징역)을 제시하고, 체납의 원인을 분류하여 이에 따라 관리한다.

따라서, 미국은 사회보장세 체납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탈세나 징수회피로 간주하여 법적 처분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처분 대상자가 책임자로 정의되는 모든 이들을 고려하고 이들의 개인 자금도 압류할 권한이 있으며, 형사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미납분 및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추적한다. 즉, 실질적으로 납입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법적제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V.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

1. 근로자 지원의 타당성 검토[17)]

국민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의 권익 즉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료 체납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담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의 귀책사유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납부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원천공제권한을 부여하여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회연대원리[18)]에 의해 보험료의 50%

17) 5장에서 논의되는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은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의 자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의 견해를 추가하여 작성된 내용임을 밝힌다.

18) 박귀천(2012)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 및 연금보험료 강제징수에 대한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운영목적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와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규정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설시한 바 있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헌재 2001.2.22, 99헌마365, 헌재 2001.8.30, 2000헌마

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및 가입기간 계산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국민연금공단, 1999).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논의한다면, 근로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수행(즉 급여에서 기여금이 공제)했으나 사용자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체납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기여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를 보면 근로자기여금은 급여지급 시 공제되고 사용자는 자신의 부담금과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자기여금을 합산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즉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보험료 납부의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법률 해석 상으로도 사업장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천공제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원, 2009). 최원(2009)은 조세에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이 중 완납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보험료 원천공제도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19].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 원천공제에 대해 성립과 확정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보험료 귀속하는 달 초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달의 임금 지급 시에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원, 2009).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강조된다. 국민연금의

668, 헌재 2003.10.30, 2000헌마801 등, 박귀천, 2012, 재인용)

19) 이와는 다르게 예납적 원천징수는 사전 징수의 필요성으로 법이 특별히 확정을 의제하는 경우로 이는 추후 반드시 정산확정을 필요로 한다(최원, 2009).

가입기간은 수급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유형인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장애관련 초진일이나 사망일이 2016.11.30.전인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시 '미납에 따른 연금급여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즉 ①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거나, ②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 미납제한에 해당된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연금지급사유 발생 이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급여를 받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국민연금공단, 2017)[20].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급여산정의 기초가 된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을 보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도 납부된 월수가 반영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산정된다(국민연금법 제77조).

20) 차진아(2013)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적 안정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납에 따른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금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격 또는 재산권적 성격이 크므로 연금보험료 미납을 수급제한 사유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Ⅴ-1〉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개월마다 5/12% 증가[21])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반환일시금 액수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국고 등 지원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법 제77조제2항)

가입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7조제2항),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가입기간의 미산입을 통해 수급권 형성 및 수급액 산정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료 체납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연금수급권이 발생된다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이 연금수급권을 발생시킴에 있어 미납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차진아, 2013).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가입기간 미산입과 관련하여 과거 판례에서도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22].

21) 1999.1.1.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단위로 지급률을 산정하였음

22)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고 가입자는 단순히 원천공제를 당할 의무 지는 자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기여금을 원천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중 일부인 기여금을 근로자의 매월 보수에서 공제하여 징수할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것만으로는 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즉 공단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료 체납에 있어 근로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체납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본연의 취지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전기철, 2013).

2. 현(現) 근로자 지원제도 개선필요성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국민연금법은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제도 즉 체납사실통지,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제도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가입기간 불산입)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강화' 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들은 세부운영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연금이 근로자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제도들은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료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여전히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근로자들은 체납사실 통지 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기여금원천공제 확인서[23]를 사용자로부터 확인

볼 수 없다(판례, 1993.12.9. 선고 93구 18329 판결).

23) 일각에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보험료 미납의 경우 임금지급이 선행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선행된 경우에 한해 근로자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체납사실 통지 월의 1/2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절차는 체납에 따른 귀책사유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사실통지[24]가 안내되지만 즉시 안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후 안내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체납사업장 근로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받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상의 어려움은 결국 근로자가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여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사용자의 원천공제와 별개로 근로자가 자신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아니지만 근로자 사용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회연대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아니지만 근로자 채용과 사회보장 목적으로서의 보험료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기여금은 임금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기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근로자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체불로 보험료가 미납된 근로자도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사용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의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권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근로자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4) 국민연금제도는 기여금 원천공제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해 불안한 위치에 놓인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기여금 원천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사실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체납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금 개별납부의 신청기한을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기여금 개별 납부월의 1/2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제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자들의 비율이 낮은 결과는 기여금개별납부신청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금개별납부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거나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현(現) 근로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현재 국민연금은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제도로 체납사실통지,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강화' 라는 취지에서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각 방안별 기대효과와 고려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사실통지월과 기여금개별납부월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둘째,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간소화 그리고 셋째, 기여금 개별납부신청기한과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 가입기간 인정확대

1)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 인정확대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체납사실통지 월의 1/2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근로자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료 체납에 있어 근로자는 귀책사

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체납 월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료의 원천공제가 확인된 경우 해당 체납 월 전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체납사실통지 대상월의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연대원리를 달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체납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에도 체납사실통지대상월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기여금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기간 인정확대에 따른 재원소요와 관련하여, 현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 인정제도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만 제출할 경우 해당 월의 1/2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더라도 보험료 지원과 같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할 경우 연금액 증액사례(〈표 Ⅴ-2〉)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체납사실통지인원 대비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홍보 등으로 가입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 인정 확대로 인해 연금액이 증액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V-2〉 가입기간 인정 사례

사례	기여금원천 공제확인서 제출이력	구분	인정개월	효과
[1]최종 보험료 납부개월이 117개월인 가입자	2015.12 2016.12 2017.12 2018.01	현행	2015.12 (1/2) 2016.12 (1/2) 2017.12 (1/2) 2018.01 (1/2)	-인정개월수 2개월. -최종가입기간 119개월로 수급권 미취득
		개선 방안	2015.12 (2/2) 2016.12 (2/2) 2017.12 (2/2) 2018.01 (2/2)	-인정개월수 4개월. -최종가입기간 121개월로 수급권 취득 가능
[2]최종 보험료 납부개월이 237개월인 가입자	2015.12 2016.12 2017.12 2018.01	현행	2015.12 (1/2) 2016.12 (1/2) 2017.12 (1/2) 2018.01 (1/2)	-인정개월수 2개월. -최종가입기간 239개월로 수급액 증액
		개선 방안	2015.12 (2/2) 2016.12 (2/2) 2017.12 (2/2) 2018.01 (2/2)	-인정개월수 4개월. -최종가입기간 241개월로 4개월로 인한 급여액증액 + 가입기간이 20년 초과에 따른 기본연금액 증액

2) 기여금개별납부의 가입인정기간 확대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체납보험료의 1/2(본인의 기여금부분)을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기여금개별납부월의 1/2을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1/2월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여금은 이미 급여가 지급될 때 공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책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측면에서 근로자가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의 1/2를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행대로 1/2월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가입기간은 1개월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부담의 완화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연대로서의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징수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25]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기여금개별납부를 할 경우 가입기간을 1개월 인정한다면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여금개별납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동시에 체납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기여금 개별납부 시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1/2월)의 인정시점이다. 사용자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1)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인정할 수도 있고 (2) 정상적인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청구할 때 기여금개별납부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1/2월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여금 개별납부 이후에도 체납월에 대한 징수노력으로 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점에 기여금개별납부이력이 있는 자의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1/2월을 인정하는 방안이 관리운영 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소요와 관련하여 현재 기여금개별납부 신청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규모(연 100명~200명)와 평균적인 납부 개월 수(약 10개월)를 고려해 볼 때 기여금 개별납부 인정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원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원소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여금개별납부 제도홍보, 가입기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제고로 기여금개별납부 신청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25) 국민연금법 제95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면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를 2년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한다.

둘째, 현재 누적체납액의 규모이다.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본 연구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체납증가분(장기간 납부되지 않는 체납액)이 연평균 약 1천 억원이었다. 따라서 누적체납보험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500억원(매년 누적체납액의 1/2)의 재원소요가 예상된다.

나.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 확인서의 제출 간소화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근로자가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경우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출과정이 어느 정도는 엄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급여명세서 없이 급여를 이체하여 주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해야 한다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공제 확인서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적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의 경우 기여금원천공제 사실확인서 제출과정에서의 근로자의 부담이나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여금원천공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근로자의 규모도 증가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공적자료가 없을 경우는 근로자가 여전히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간소화 방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한 확대

체납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한을 “월별 납부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을 두는 것에서 “연금수급연령 이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기한을 연장할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또는 납부능력이 있는 시기)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해당 체납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은 납부시점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여금개별납부도 납부시점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기여금 개별납부 대상기간 확대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는 본인의 기여금만을 개별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 측면에서 근로자가 월보험료 전체를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 측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대안일 수 있으나 재정적 부담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기여금개별납부제도는 근로자의 기여금만 납부하고 가입기간도 1/2(사용자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험료 전체(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또한 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월 보험료의 1/2를 납부하거나 전체를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

이 월 보험료 전체를 납부하므로 가입기간 인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을 요구하지 않아 재정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월보험료 전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험료 납무의무자인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회피가 강화되어 이로 인해 근로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둘째, 종전의 「보험료 개별 납부제도」를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로 전환한 배경에는 근로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특히 저소득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 전체를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해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 부분까지 포함하여 연금보험료 전체를 납부하는 것이 노사 간 사회연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마. 재원마련방안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기여금을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1/2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는 방안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재원마련을 위한 행정적 부담도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재 국민연금의 운영방식(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을 고려해 볼 때, 기금안정과 다른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함에 있어 국민연금기금에서만 충당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보험료 납부를 회피 등 도덕적 해이 및 성실납부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월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충당하거나 월보험료 1/2의 50%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사회연대기금에서 충당(예: 실업크레딧[26])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및 기여금개별납부신청제도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해 볼 때, 임금체불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기금이나 다른 사회연대기금(예,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에는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고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박귀천, 2012)[27]. 따라서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인정할 때

26) 현재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25%, 국고지원 25%, 고용보험 25%, 국민연금기금 25%로 마련되고 있다.
27) 현행법 제27조, 개정법 제28조

국고로 지원되는 점, 현행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가입기간 지원방안인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등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추가가입기간 인정에 따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고지원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연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의 책임이 일반 국민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

〈표 Ⅴ-3〉 각 방안별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개선방안 가-1)	• **체납사실통지월의 가입기간 인정확대**
기대효과	• 귀책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 및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취지 달성 •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방식에 변동이 없어 행정적 부담이 적음
고려사항	• 장기적으로 가입기간 인정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예상
개선방안 가-2)	• **기여금개별납부의 가입인정기간 확대**
기대효과	• 귀책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 및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취지 달성 • 근로자의 납부부담 완화
고려사항	• 일부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의 인정시점 논의 • 장기적으로 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예상
개선방안 나	• **기여금 원천공제사실 확인서 제출 간소화**
기대효과	• 확인서 제출과정에서의 근로자 부담 경감 •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제출 근로자 규모 증가로 제도의 취지 달성에 기여
고려사항	• (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 (나) 공적자료가 없을 경우 실효성이 없음
개선방안 다	•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기한 확대**
기대효과	• 개별납부시기에 대해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고려사항	• 납부시점에 따른 소득대체율 적용방안 강구
개선방안 라	• **기여금 개별납부 대상기간 확대**
기대효과	•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가입자에 대한 선택권 강화 • 별도의 재원마련 불필요
고려사항	•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저소득층 근로자일 경우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 사회연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제기

〈표 Ⅴ-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체당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2. 목표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 등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권리보호에 기여

3. 사업개요
○ 도산·가동 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
○ 영세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에서 퇴직한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 기타 임금채권보장업무의 일부위탁에 따른 출연 등

4. 주요내용
(1) 체당금의 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적용
(2) 사용주의 부담금 비율: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함(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3) 소액체당금 제도: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자료: 2017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

〈표 Ⅴ-5〉 고용보험기금의 주요내용

1. 설치목적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2. 기금의 특성
○ 대량 실업, 고용 불안 등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 연도 지출 소요를 초과하는 자금을 적립하며,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적립규모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은 1.5~2.0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배를 유지

3. 조성재원
○ 보험료: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
-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결정
○ 보험료 부담비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3%)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
○ 그 밖의 징수금, 적립금(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사용자 처벌 등 징수강화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근로자 지원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강화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방안은 보험료 체납이 발생한 이후 상황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체납 시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징수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법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 사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사용자

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납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즉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액 5천만 원 이상"과 "2년 경과" 요건을 충족해야 인적사항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대상이 적고 이에 따른 제재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 사용자가 납부노력을 하였으나 경영부진 등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의한 체납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체납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고발하더라도 경영상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28].

따라서 보험료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납사용자 처벌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고려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납사용자의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인적사항 공개 이외에 국세체납시 처벌 예를 적용하는 등 추가조치를 통해 체납에 따른 제재를 강화할 필요하다. 즉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기준을 현행 5천 만원보다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체납으로의 전환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28)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①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뿐만 아니라 ②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며, ③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대법원 판결 2004도 9001).

는 요건도 1년 등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 시 처벌 예를 적용하여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사용자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유로 한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의한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국세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음이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수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공단(2017). 국민연금직무교재-급여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7년 제30호

박귀천(2012).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사회보장법학, 1(1), 121-154

전기철(2013).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에 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차진아(2013).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법학, 2(2), 5-51

최원(2009).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성질. 사회법연구, 12, 243-26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본

国民年金法 第八十八条

健康保険法 第一百八十一条

厚生年金保険法 第八十五条 및 第八十六条

국민연금연구원 해외출장(2018.6.26.~2018.6.29.) 결과보고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6672(a)

United States Code, Title 18

https://www.irs.gov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2017년도

연구보고서 2017-01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	이용하, 소성규 외	2018.4.
연구보고서 2017-02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에 관한 연구	황정욱, 강병진	2018.4.
연구보고서 2017-03	명목확정기여방식에 관한 기초연구	유호선, 유현경	2018.4.
연구보고서 2017-04	노령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진	2018.4.
연구보고서 2017-05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	송현주, 임란	2018.4.
연구보고서 2017-06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한신실	2018.4.
연구보고서 2017-07	전망기간 연장을 고려한 중기재정추계모형 재구축	신경혜, 박성민	2018.4.
연구보고서 2017-08	가입행태를 고려한 국민·퇴직연금의 급여분석모형 구축과 노후소득 보장효과	한정림, 최경진	2018.7.
연구보고서 2017-09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및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정성 분석	신승희, 권혁진, 손현섭	2018.7.
연구보고서 2017-10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이진웅	2018.4.
연구보고서 2017-11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개선 연구	성명기	2018.4.
연구보고서 2017-12	국민연금기금의 목표초과수익률 설정에 관한 연구	황정욱, 태엄철	2018.4.
연구보고서 2017-13	국내주식 포트폴리오 및 강화지수 연구: 기업부채비율 행태를 반영한 요인(factor)구성을 중심으로	강대일, 태엄철	2018.4.
정책보고서 2017-01	국민연금 상품 투자에 관한 연구	주상철, 이정화	2018.4.

정책보고서 2017-02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황정욱, 강대일 외	2018.4.
정책보고서 2017-0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검토	최옥금, 이은영	2018.4.
정책보고서 2017-04	국민연금 부동산 자산의 정책벤치마크 설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김민정	2018.7.
정책보고서 2017-05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주상철, 원상희	2018.7.
정책보고서 2017-06	국민연금기금의 기준포트폴리오 설정 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8.7.
정책보고서 2017-07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정인영, 유현경	2018.7.
정책보고서 2017-08	기초연금의 차등보조율 개선방안 연구	안서연, 한신실	2018.7.
정책보고서 2017-09	지역가입자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 비중 전망	윤병욱, 송창길	2018.4.
정책보고서 2017-10	확률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국민연금 ALM에 관한 연구- I	김민정, 최영민	2018.7.
조사보고서 2017-01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여가, 대인관계, 건강을 중심으로	송현주, 임란 외	2017.12.
연차보고서 2017-01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신경혜, 박성민 외	2017.6.
연차보고서 2017-02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ALM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김민정 외	2018.7.
용역보고서 2017-01	내과상병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반상태 구분표를 중심으로	대구대 산학협력단	2018.7.
용역보고서 2017-02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가계경제에 대한 영향 비교연구	유경원	2018.4.
용역보고서 2017-03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비교연구	박철성, 김보민	2018.7.
용역보고서 2017-04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I, II	고려대 산학협력단	2018.4.
요약보고서 2017-01	2017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8.9.

연구자료 2017-01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외	2018.7.
연구자료 2017-02	국민연금 가입제도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	김헌수, 김아람	2018.8
연구자료 2017-03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구조 비교분석	최기홍, 이진웅	2018.8
연구자료 2017-04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계에 대한 연구	김형수	2018.8
프로젝트 2017-0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16	재정추계 분석실	2017.5.
프로젝트 2017-0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최옥금, 이은영	2018.4.
프로젝트 2017-03	2017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최옥금, 안서연 외	2018.7.
프로젝트 2017-04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유호선, 김진수 외	2018.7.
프로젝트 2017-05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정인영, 정창률	2018.7.
프로젝트 2017-06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과 정부의 역할	김헌수, 유호선 외	2018.7.
프로젝트 2017-07	일본의 공사연금제도 연구	김헌수, 김재현	2018.7.
단기과제 2017-01	단기연구과제1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한 검토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소재 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출기준의 적정성	유호선, 김헌수, 정인영, 김혜진 외	2018.8
단기과제 2017-02	단기연구과제2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도구 비교분석(활동능력평가 도구를 중심으로) • 구상·환수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 일용·단시간 근로자 대상 소득기준 적용방안 • 외국 연금기관의 연금급여사업 성과지표 조사 • 양육 크레딧 신설 방안 검토	오욱찬, 유현경, 최옥금, 정인영, 안서연, 황정욱 외	2018.8
단기과제 2017-03	기금운용 관련 정보공개의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황정욱, 이정화	2018.8

2016년도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 (비공개)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비공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헌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비공개)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	송현주, 임란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요약보고서 2016-01	2016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7.6.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붕 외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단기과제 2016-01	단기연구과제1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연계방안)	오욱찬, 이재은	2017.4
단기과제 2016-02	단기연구과제2 (공단 내·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가치 창출 및 업무 활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 방안)	유호선, 왕승현, 이은영	2017.4
단기과제 2016-03	단기연구과제3 (60세 이후 연령대별 필요 생활자금 조사, 노후준비 교육의 체계 및 주제 분류, 내연금 사이트 종합재무설계 내용 개선)	성혜영, 김아람	2017.4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비공개) -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 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붕,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비공개)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홍,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개선 접근법	최기홍, 신성휘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곤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관한 연구 -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헌수, 유현경	2016.5.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비공개)	이재현	2016.5.
워킹페이퍼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저자 약력

• **성 혜 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소비자·가족학 전공)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 노후생활수준의 변화. 국민연금연구원. 2018.

▶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민연금연구원. 2016.

• **김 혜 진**

University of Kansas 사회복지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 노령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7

▶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8

• **김 아 람**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금융학 석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주요저서〉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2018.

▶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 노후생활수준의 변화. 국민연금연구원. 2018.

프로젝트 2018-04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년 12월 인쇄
2018년 12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4

ISBN 978-89-6338-471-9